

우리 말로 바로잡아 본 헌법 ②

이 오 덕

第3章 國會 제3장 국회

第40條 [立法權]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제40조 입법권 입법권 국회 있다.

第41條 [構成] ① 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
제41조 구성 국회 국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하여 뽑아낸 국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 이상으로 한다.
국회의원 수 법률 인

③ 國會議員의 選舉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舉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비례대표제 그밖에 선거 법률

第42條 [議員의 任期]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제42조 의원 임기 국회의원 임기 년

第43條 [議員의 兼職制限]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제43조 의원 겸직 제한 국회의원 법률 직

第44條 [議員의 不逮捕特權] ① 國會議員은 現行犯人の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會
제44조 의원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 현행범인 가 아니고는 회기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국회 동의 체포 구금

② 國會議員이 會期 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
국회의원 회기 체포 구금 현행범인 아니고는 국회
가 있으면 會期中 釋放된다.
회기 석방

第45條 [發言·表決의 院外免責]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제45조 발언 표결 원의 면책 국회의원 국회 직무로 한 말 표결
관하여 國會 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 밖 책임

第46條 [議員의 義務] ① 國會議員은 清廉의 義務가 있다.
제46조 의원 의무 국회의원 청렴 의무

② 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국회의원 국가 이익 먼저하여 양심 맡은 일을 한다.

③ 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滥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
국회의원 자리 함부로 써서 국가 공공단체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분에 의하여 財產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
처분에 따른 재산상 권리 직위 얻거나 다른 사람 그것을 얻도록
선할 수 없다.

第47條 [定期會·臨時會] ① 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제47조 정기회 임시회 국회 정기회 법률 데에 따라서 해마다 한번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모이며, 국회 임시회 대통령 국회 재적 의원 분 따라서
集會된다.
모인다.

② 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정기회 회기 일 임시회 회기 일 넘을

③ 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대통령 임시회 집회 기간 집회를 요구하는 까닭을 밝혀야
한다.

第48條 [議長·副議長]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제48조 의장 부의장 국회 의장 한 사람 부의장 두 사람 뽑는다.

第49條 [議決定足數와 議決方法]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
제49조 의결 정족수 의결 방법 국회 헌법 법률 규정 없으면 재
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
적 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가·부>가 같은 수인 부
결된 것으로 본다.

第50條 [議事公開의 原則] ① 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賛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하는 의장 국가 안전보장 공개 나 할 수 있다.

② 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공개 회의 내용 공표 법률 대로 한다.

第51條 [議案의 次期繼續]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까닭으로 國회의원 임기 끝나는 폐기된다.

第52條 [法律案提出權]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 정부 법률안

第53條 [法律의 公布, 大統領의 再議要求, 法律案의 確定 · 發效] ① 國會에서 議決된 제53조 법률안 공포 대통령 다시 의논 요구 법률안 확정 발효 국회 의결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법률안 정부 보내어 일 대통령 공포

② 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법률안 다른 의견이 대통령 제1항 기간 안 다른 의견서 국회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돌려주고, 그것을 다시 의논하도록 국회 폐회

③ 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대통령 법률안 수정 다시 의논하도록

④ 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불이고,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 다시 의논하기를 요구할 국회 다시 의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分의 2 이상의 賛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찬성 전 의결 법률안 법률

⑤ 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 대통령 제1항 기간 안 공포 다시 의논 법률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법률

⑥ 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 대통령 제4항 제5항 규정 따라 법률

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제5항 따라 법률 뒤 제4항 따라 확정된 법률을 정부 보낸 뒤

5일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일 안에 대통령 공포 국회의장 공포

⑦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を 발생한다. 법률 규정 없으면 공포 날부터 일 지나서 효력을 발생한다.

第54條 [豫算案의 審議 · 確定, 議決期間 經過時의 措置] ① 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제54조 예산안 심의 확정 의결 기간이 지났을 때의 처리 국회 국가 예산안

審議 · 確定한다.
심의 확정

② 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 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 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정부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회계연도 시작 일 국회

③ 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 회계연도 시작 예산안 의결 정부 국회
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예산안 의결 목적 경비 전년도 예산 따라 집행 수 있다.

-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 · 운영

- 法律上 支出義務의 術行

-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繼續費 · 豫備費] ① 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55조 계속비 예비비 회계 연도 지출

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정부 연한 계속비 국회 의결

② 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 예비비 총액 국회 의결 예비비 지출 다음 국회

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追加更正豫算] 政府는豫算에變更을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追加更正豫
제56조 추가경정 예산 정부 예산을 고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

法案을編成하여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산안 편성 국회

第57條 [支出豫算各項의增額과 새費目的設置禁止] 國會는政府의同意 없이政府
제57조 지출예산 각항 증액 비용항목 설치금지 국회 정부 동의 정부
가 제출한支出豫算各項의金額을增加하거나새費目的을設置할 수 없다.
지출예산 각항 증액 불리거나 비용 항목 만들

第58條 [國債募集 등에 대한議決權] 國債을 모집하거나豫算 외에國家의 부담이 될
제58조 국채 모집 따위 의결권 국채 예산 밖 국가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政府는미리國會의議決을얻어야 한다.
계약 맷으려 정부 국회 의결

第59條 [租稅의種目과稅率] 租稅의種目과稅率은法律로정한다.
제59조 세금 종목 세금 종목 세율 법률

第60條 [條約·宣戰布告 등에 관한同意] ① 國會는相互協助 또는安全保障에 관한
제60조 조약 선전포고 들 동의 국회 서로돕기나 안전보장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條約, 講
조약 국제조직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 제약 조약 강
화조약 국가 국민 재정 조약 입법 사항 조
약의 체결·批准에 대한同意權을 가진다.
약을 맺거나 비준하는 일에 동의권

② 國會는宣戰布告, 國軍의外國에의派遣 또는外國軍隊의大韓民國領域 안에서의
국회 선전포고 국군 외국 파견 외국군대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駐留에 대한同意權을 가진다.
머물러 있는 일에 대해 동의할 권리를

第61條 [國政에 관한監查·調查權] ① 國會는國政을監查하거나 특정한國政事業
제61조 국정 감사 조사권 국회 국정 감사 국정사업
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書類의提出 또는證人的출석과證言이나
조사 서류 제출 증인 증언
의견의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진술

② 國政監查 및 調査에 관한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法律로정한다.
국정감사와 조사 절차 그밖에 법률

第62條 [國務總理 등의國會出席] ①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政府委員은國會나
제62조 국무총리들 국회 출석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국회
그委員會에 출석하여國政處理狀況을보고하거나 의견을陳述하고質問에 응답할 수
위원회 국정 처리 협력 말하고 질문 대답할

있다.

② 國會나 그委員會의요구가있을때에는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政府委員은출
국회 위원회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석·답변하여야하며, 國務總理 또는國務委員이出席要求를받은때에는國務委員또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요구 국무위원
는政府委員으로 하여금출석·답변하게할수있다.
정부위원에게

第63條 [國務總理·國務委員解任建議權] ① 國會는國務總理 또는國務委員의解任
제63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국회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을大統領에게建議할수있다.
대통령 건의

② 第1項의解任建議는國會在籍議員3분의1 이상의發議에의하여國會在籍議員
제1항 해임 건의 국회 재적 의원 분
過半數의贊성이있어야한다.
과반수 찬성

第64條 [國會의自律權] ① 國會는法律에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議事와內
제64조 국회 자율권 국회 법률 걸리지 회의 사항과
部規律에관한規則을制定할수있다.
내부 규율 규칙 제정

② 國會는議員의資格을審查하며,議員을懲戒할수있다.
국회 의원 자격 심사 의원 징계

③ 議員을除名하려면國會在籍議員3분의2 이상의贊성이있어야한다.
의원 제명 국회 재적 의원 분
찬성

④ 第2項과第3項의處分에대하여는法院에提訴할수없다.
제2항 제3항 처분 법원 제소

第65條 [彈劾訴追權과 그決定의效力] ①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제65조 탄핵소추권 결정 효력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長·憲法裁判所裁判官·法官·監查委員·기타法律이정한公務員이그職務執行에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감사위원 그밖에 법률 공무원 직무집행에서
있어서憲法이나法律을違背한 때에는國會는彈劾의訴追를議決할수있다.
헌법 법률 어긴 국회 탄핵 소추 의결

② 第1項의彈劾訴追는國會在籍議員3분의1 이상의發議가있어야하며그議決은
제1항 탄핵소추 국회 재적 의원 분
의결

國會在籍議員過半數의贊성이있어야한다. 다만, 大統領에대한彈劾訴追는國會在籍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재적
의원過半數의發議와國會在籍醫院3분의2 이상의贊성이있어야한다.
위원회 과반수의 발의 국회 재적 의원 분
찬성

- ③ 弹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弹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탄핵소추 의결 사람은 탄핵 심판 권한행사를 멈춘다.
- ④ 弹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
탄핵결정 공직에서 파면 따라서 민사상 형사
- 상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상 책임 면제

第4章 政府 제4장 정부

第1節 大統領 제1절 대통령

第66條 [大統領의 地位 · 責務 · 行政權] ①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
제66조 대통령 자리 책무 행정권 대통령 국가 원수 외국
여 國家를 代表한다.
국가 대표

② 大統領은 國家의 獨立 · 領土의 保全 · 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
대통령 국가 독립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 헌법 지킬 책무
다.

③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대통령 조국 평화스런 통일 의무

④ 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행정권 대통령 수반 정부 있다.

第67條 [大統領의 選舉 · 被選舉權] ①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 · 平等 · 直接 · 秘密選舉
제67조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대통령 국민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에 의하여 選出한다.
로 뽑는다.

② 第1項의 選舉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
제1항 선거에서 최고득표자 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공개회의 다수표 사람을 당선자

③ 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舉權者 總數의 3分의 1 이상이 아니
대통령 후보자 인 득표수 선거권자 총수 분

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대통령 당선

④ 大統領으로 選舉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있고 選舉日 현재 40歲
대통령 선거 사람은 국가의원 피선거권 선거일 세
에 達하여야 한다.
이르러야

第68條 [大統領選舉의 時期 · 補闕] ① 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 滿了
제68조 대통령 선거 시기 보궐 대통령 임기 끝나는 임기 끝나기

70日 내지 40日 전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일에서 일 후임자 선거

② 大統領이 關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대통령 당선자 죽거나 판결 그밖 일
격을 喪失한 때에는 60日 이내에 後任者를 選舉한다.
격 없었을 일 안 후임자 선거

第69條 [大統領의 就任宣誓]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제69조 대통령 취임 선서 대통령 취임을 할 때 다짐을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헌법 지키고 국가 지키며 조국 평화 통일 국민 자유 복리 증진 그리고
민족문화의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
민족문화가 잘 뻗어 자라나도록 대통령으로서 할 일 다할 국민
숙히 宣誓합니다.”
다짐

第70條 [大統領의 任期]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제70조 대통령 임기 대통령 임기 5년 거듭 말을

第71條 [大統領權限代行] 大統領이 關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
제71조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비거나 사고로 직무 해제
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국무총리 법률 국무위원 차례 권한 대신

第72條 [重要政策의 國民投票]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 · 國防 · 統
제72조 중요 정책 국민투표 대통령 외교 국방 통
일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일 그밖에 국가안위 중요 정책 국민투표

第73條 [外交 · 宣戰講和權] 大統領은 條約를 체결 · 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 · 접
제73조 외교 전쟁선언 강화권 대통령 조약 맺거나 비준 외교사절 신임
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파견 선전포고 강화

第74條 [國軍統帥權 등] ①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
제74조 국군통수권 그밖 대통령 헌법 법률 대로 국군 통수

한다.

② 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국군 조직 편성 법률

第75條 [大統領令]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제75조 대통령 대통령 법률 뚜렷하게 위임 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법률 집행 일 대통령 날

第76條 [緊急處分 · 命令權] ① 大統領은 內憂 · 外患 · 天災 · 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 · 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76조 긴급처분 명령권 대통령 나라안 걱정 나리밖 걱정 하늘재앙 땅 변동 재정 경제상 위기에서 국가 안전보장 일반사회 안녕 질서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
조처 국회 집회 한정하여 아주 줄잡아
요한 財政 · 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を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재정 경제상 처분 법률 효력 명령 날
있다.

② 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
대통령 국가 안위 교전 상태에서 국가 지키기
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を 가지
조처 국회 집회 할 수 없는 한정하여 법률 효력
는 命令을 발할 수가 있다.
명령 날

③ 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
대통령 제1항 제2항 처분 명령 국회
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を喪失한
제3항 처분 명령 효력 잃는다.
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
명령 따라서 개정 폐지 법률 명령
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を 회복한다.
효력

⑤ 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대통령 제3항 제4항 까닭을 공포

第77條 [布嚴布告 등] ① 大統領은 戰時 ·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 非常事態에 있
제77조 계엄 포고 따위 대통령 전쟁 사변 이와 비슷한 국가 비상상태에서

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병력으로 군사상 따르거나 사회일반 안녕 질서

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법률 대로 계엄 선포

② 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계엄 비상계엄 경비계엄

③ 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 · 出版 · 集會 · 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업 선포 법률 대로 영장 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정부 법원 권한 조치

④ 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계엄 선포 대통령 국회 알려야

⑤ 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 계엄 해제 대동령
解除하여야 한다.
해제

第78條 [公務員 任命權]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
제78조 공무원 임명권 대통령 헌법 법률 대로 공무원 임면
한다.

第79條 [赦免權] ①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脱免 · 減刑 또는 復權을
제79조 사면권 대통령 법률 대로 사면 감형 복권
명할 수 있다.

② 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일반사면 명 국회 동의

③ 脱免 · 減刑 및 復權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사면 감형과 복권 사항 법률

第80條 [榮典授與權]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
영전을 줄 권리 대통령 법률 대로 훈장 그밖 영전 준
한다.
다.

第81條 [國會에 대한 意思表示]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
제81조 국회 의견 표시 대통령 국회 말 편지
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國法上 行爲의 要件]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제82조 국법상 행위 조건 대통령 국법상 문서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함께 이름을 적는다. 군사

第83條 [兼職禁止] 大統領은 國務總理 · 國務委員 · 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제83조 겸직 금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 장 그밖에 법률을

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공사 직
第84條 [刑事上の 特權] 大統領은 内亂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
제84조 형사상 특권 대통령 내란 외환 죄 저지른 가 아니고는 재
職中 刑事上の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직 형사상 소추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제85조 전직 대통령 신분 예우 전직 대통령 신분 예우 법률을
정한다.

第2節 行政府

제2절 행정부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제1관 國무총리 國무위원

第86條 [國務總理] ① 國務總리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제86조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② 國務總리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
국무총리 대통령 보좌 행정 대통령 명 행정 각부 모
轄한다.

두 거느려 관할한다.

③ 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군인 현역 면 뒤 국무총리 임명

第87條 [國務委員] ①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제87조 국무위원 국무위원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② 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국무위원 국정 대통령 보좌 국무회의 구성원 국정
審議한다.
심의

③ 國務總리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대통령 건의

④ 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군인 현역 면 뒤 국무위원 임명

第2款 國務會議

제2관 國무회의

第88條 [權限, 構成] ① 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제88조 권한 구성 국무회의 정부 권한 들어있는 정책 심의

② 國務會議는 大統領 · 國務總理와 15人 이상 30人 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국무회의 대통령 국무총리 인 국무위원 인

③ 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대통령 국무회의 의장 국무총리 부의장

第89條 [審議事項]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제89조 심의할 것 국무회의 심의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국정 기본계획 정부 일반정책

2. 宣戰 · 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전쟁선언 강화 그밖에 대외 정책

3. 憲法改正案 · 國民投票案 · 條約案 · 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그리고 대통령령안

4. 豫算案 · 決算 · 國有財產處分의 基本計劃 ·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 기본 계획 국가 계약 그밖에 재정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 · 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대통령 긴급령 긴급재정경제처분과 명령 계엄 해제

6. 軍事에 관한 중요 사항
군사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국회 임시회 집회

8. 禮典授與
영전 수여

9. 脱免 · 減刑과 復權
사면 감면 국권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計定
행정 각부 사이 권한 획정

11. 行政 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행정 권한 위임 배정 기본 계획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국정 처리 상황 평가 분석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樹立과調整
행정 각부 정책 수립 조정
14. 政黨解散의 提訴
정당 해산 제소
15. 政府에 提出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審查
정부 제출 정부 정책 청원 심사
16. 檢察總長·合同參謀總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검찰총장 합동참모총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그밖에 법률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공무원 국영기업체 관리자 임명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그밖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 第90條 [國家元老諮詢會議] ① 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제90조 국가원로 자문회의 국정 대통령 자문 대답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詢會議를 둘 수 있다.
국가원로 국가원로 자문회의
- ② 國家元老諮詢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국가원로 자문회의 의장 바로 앞 대통령 바로 앞 대통령
- 大統領이 指名한다.
대통령 지명
- ③ 國家元老諮詢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국가원로 자문회의 조직 직무 범위 그밖에 법률
- 第91條 [國家安全保障會議] ①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 대외 정책 군사 정책 국내
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
정책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자문 대답하기 국가안
全保障會議를 둔다.
전보장회의
- ② 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주재
- ③ 國家安全保障會議는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직무 범위 그밖에 법률
- 第92條 [民主平和統一諮詢會議] ① 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
제92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평화통일 정책 대통령 자문 대
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詢會議를 둘 수 있다.
답하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 ② 民主平和統一諮詢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조직 직무 범위 그밖에 법률
- 第93條 [國民經濟諮詢會議] ① 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제93조 국민경제 자문회의 국민경제 중요 정책
-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詢會議를 둘 수 있다.
대통령 자문 대답하기 국민경제 자문회의
- ② 國民經濟諮詢會議는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국민경제 자문회의 조직 직무 범위 그밖에 법률
- 第3款 行政各部
제4관 行政 각부
- 第94條 [各部의 長]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
제94조 각부 장 행정 각부 장 국무위원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이 任命한다.
임명
- 第95條 [總理令, 部令]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제95조 총리령 부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 장 소관 사무 법률
大統領令이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 위임 직권 총리령 부령 날
- 第96條 [各部의 組織·職務]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제96조 각부 조직 직무 행정 각부 설치 조직 직무 범위 법률
- 第4款 監查院
제4관 감사원
- 第97條 [職務와 所屬]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
제97조 직무 소속 국가 세입 세출 결산 국가와 법률 단체 회계
檢查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查院
감사,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 감찰 대통령에 따르니 감사원
을 둔다.
- 第98條 [構成] ① 監查院을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하의 監查委員으로 구성
제98조 구성 감사원 원장 인 인 감사위원
한다.
- ②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원장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임기 년 한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번만 거듭 말을

③ 監查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감사위원 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임기 년 한 번만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거듭 말을

第99條 [檢查와 報告] 監查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查하여 大統領과 次年
제99조 검사 보고 감사원 세입 세출 결산 해마다 검사 대통령 다음 연
度 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도 國회

第100條 [組織·職務範圍 등] 監查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查委員의 資格·監查對象
제100조 조직 직무 범위 그밖 감사원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 자격 감사 대상
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공무원 그밖에 법률

第5章 法院

제5장 법원

第101條 [司法權·法院의 組織·法官의 資格] ① 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제101조 사법권 법원 조직 법관 자격 사법권 법원 법원
속한다.

있다.

② 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법원 최고법원 대법원 각급 법원 조직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법관 자격 법률

第102條 [大法院] ① 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제102조 대법원 대법원 부

② 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대법원 대법관 법률 대로 대법관 법관
둘 수 있다.

③ 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대법원 각급 법원 조직 법률

第103條 [法官의 獨立]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
제103조 법관 독립 법관 현법 법률로써 양심 독립 심판

한다.

第104條 [大法院長·大法官의 任命] ① 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
제104조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대법원장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命한다.

명

② 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대법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③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대법관회의 동의 대법원장 임명
다.

第105條 [法官의 任期·連任·停年] ① 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제105조 법관 임기 연임 정년 대법원장 임기 년 거듭 말을
없다.

② 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대법관 임기 년 법률 대로 계속 말을

③ 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임기 년 법률 대로
하여 連任할 수 있다.
계속 말을

④ 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법관 정년 법률

第106條 [法官의 身分保障] ① 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宣告에 의하지
제106조 법관 신분 보장 법관 탄핵 금고 형 선고를 받지
아니하고는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파면 징계처분에 따르지 정직 감봉 그밖에 불리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처분

② 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
법관 몸과 마음의 커다란 장해 말은 일을 해낼 법률 대로
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퇴직

第107條 [法律 등 違憲提請·審查權·行政審判] ① 法律이 憲法에違反되는 여부가
제107조 법률 그밖의 위원 제청 심사권 행정심판 법률 현법을 어기는지 안어기는지가
裁判의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재판 전제 법원 현법재판소 제청 심판 따라 재판

② 命令 · 規則 또는 處分이 檢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前提가 된 경우
명령 규칙 처분 헌법 법률을 어기거나 안어기는지가 재판 전제

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查할 權利를 가진다.
대법원 마지막으로 심사 권리

③ 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재판 전심 절차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 법률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사법 절차를 따라야

第108條 [大法院의 規則制定權]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訴
제108조 대법원 규칙 제정권 대법원 법률 걸리지 소
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内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송 절차 법원 내부 규율 사무처리 규칙 제정

第109條 [裁判公開의 原則]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제109조 재판 공개 원칙 재판 심리 판결 공개 심리 국가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안전보장 안녕 질서 착한 풍속 해칠 법원
判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정 공개

第110條 [軍事裁判] ① 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제110조 군사재판 군사재판 특별법원 군사법원
수 있다.

② 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 상고심 대법원

③ 軍事法院의 組織 · 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군사법원 조직과 권한 재판관 자격 법률

④ 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 · 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
비상계엄하 군사재판 군인 군무원 범죄 군사 간첩죄 초
兵 · 哨所 · 有毒食物供給 · 捕虜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병 초소 독있는 음식물 공급 포로 죄 범률 경우에 한정하여 단심
수 있다. 다만, 死刑을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형 선고

第6章 檢法裁判所

제6장 헌법재판소

第111條 [管掌과 構成 등] ① 檢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제111조 같은 일 구성 그밖 헌법재판소 일 맡는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법원 제청 따른 법률 위헌 여부 심판

2. 彙劾의 審判
탄핵 심판

3. 政黨의 解散 審判
정당 해산 심판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相互間의 權限
국가기관끼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끼리 권한
爭議에 관한 審判
다툼 심판

5. 法律이 정하는 檢法訴願에 관한 審判
법률 헌법소원 심판

② 檢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の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헌법재판소 법관 자격 인 재판관 재판관 대통령
任命한다. 임명

③ 第2項의 裁判官 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제2항 재판관 인 국회 뽑는 사람을 인 대법원장 지명 사람
者를 任命한다. 을 임명

④ 檢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헌법재판소 장 국회 동의 재판관 대통령 임명

第112條 [裁判官의 任期와 政治關與禁止 · 身分保障] ① 檢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제112조 재판관 임기 정치관여 금지 신분보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년 법률 대로 계속 맡을

② 檢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당 들어가거나 정치 관계할

③ 檢法裁判所 裁判官은 彙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罷免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 금고 형 선고를 받지
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決定定足數 · 組織運營] ① 檢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彙劾의 決定,
제113조 결정 정족수 조직 운영 헌법재판소 법률 위헌 결정 탄핵 결정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檢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이상의 賛成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동인결정 재판관 인 찬성

이 있어야 한다.

② 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内部規律
헌법재판소 법률 걸리지 심판 절차 내부규율
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사무처리 규칙 제정

③ 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조직 그밖에 법률

第7章 選舉管理 제7장 선거 관리

第114條 [選舉管理委員會] ① 選舉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국민투표 관리와 정당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

②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임명 인 국회 뽑아내는 인 대법원
장 지명 인 위원 위원장 위원 서로 뽑는다.

③ 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위원 임기 년

④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 정당 들어가거나 정치 관계할

⑤ 委員은 彙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
위원 퇴핵 금고 형 선고를 받지 과연
다.

⑥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 안에서 選舉管理 · 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령 선거 관리 국민투표 관리 정당 사
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内部規律
무 규칙 제정 법률 걸리지 내부 규율
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규칙 제정

⑦ 각급 選舉管理委員會의 組織 · 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직무 범위 그밖에 법률

第115條 [選舉管理委員會의 行政機關指示權] ① 各級 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人名簿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 행정기관 지시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의 작성 등 選舉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작성과 같은 선거 사무 국민투표 사무 行政기관 지시
있다.

② 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 지시 행정기관 따라야

第116條 [選舉運動 · 選舉經費] ① 選舉運動은 各級 選舉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
제116조 선거 운동 선거 경비 선거 운동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해서 법률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均等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회가 고르게 뒷받침되어야

② 選舉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
선거 경비 법률 경우가 아니고는 정당 후보자
시킬 수 없다.

第8章 地方自治 제8장 지방자치

第117條 [自治權, 自治團體의 種類] ① 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제117조 자치권 자치단체 종류 지방자치단체 주민 행복과 이의 사무

처리하고 財產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 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재산 법령 자치 규정 제정

② 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법률

第118條 [自治團體의 組織 · 運營] ① 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제118조 자치단체 조직 운영 지방자치단체 의회

② 地方議會의 組織 · 權限 · 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 선거 지방단체단체 장 선임 방법 그밖에 지방자
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치단체 조직 법률

第9章 經濟 제9장 경제

第119條 [經濟秩序의 基本 · 經濟의 規制 · 調整] ①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제119조 경제질서 기본 경제 규제 조정 대한민국 경제질서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기업 경제상 자유 창의 기본

② 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
국가 고른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 일맞은 소득 분배 시
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
장 지배 경제력을 함부로 쓰는 것을 막으며 경제주체 사이 어울림으로 경제 민주화
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경제 규제 조정

第120條 [天然資源의 採取 · 開發 등의 特許 · 保護] ① 鎳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 ·
제120조 천연자원 채취 개발 따위 특허 보호 광물 그밖에 지하자원

水產資源 · 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수산자원 물력 경제상 자연힘 법률 대로

期間 그 採取 · 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기간 채취 개발 특허

② 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국토 자원 국가 고른 개발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계획 세운다.

第121條 [農地의 小作禁止 · 貸貸借 · 委託經營] ① 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제121조 농사땅 소작금지 임대차 위탁경영 국가 농사땅 농민은 논밭을 지켜야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한다는 이루어질 농사땅 소작 제도

② 農業生產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
농업의 생산성 높이기 농사땅을 이치에 맞게 이용하기 어쩔 수 없는 사정 일어
하는 農地의 貸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는 농사땅 임대차 위탁경영 법률 대로 인정한다.

第122條 [國土의 利用 · 開發과 保全]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產 및 生活의 基盤이 되
제122조 국토 이용 개발 보전 국가 국민 생산과 생활 기반

는 國土의 效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 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
국토를 쓸모 있고 고르게 개발하고 보전하기 법률 대로

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義務를 計劃할 수 있다.
의무 줄

第123條 [農 · 漁村綜合開發과 中小企業保護 · 育成] ① 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
제123조 농 어촌 종합개발 중소기업 보호 육성 국가 농업과 어업

호 · 육성하기 위하여 農 · 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 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 · 施行하여야
농 어촌 종합개발 따위 계획 세우고 시행

한다.

② 國家는 地方間의 균형있는 發展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국가 지방 끼리 고른 지역경제 의무

③ 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 · 육성하여야 한다.
국가 중소기업

④ 國家는 農水產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
국가 농수산물 수급 균형 유통구조 기격 안정 데
로써 農 · 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농 어민

⑤ 國家는 農 · 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活動과 발
국가 농 어민 중소기업이 스스로 돋는 조직 길러야
전을 보장한다.
뒷받침한다.

第124條 [消費者保護]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產品의 品質向上을 촉
제124조 소비자 보호 국가 소비 행위 일깨우고 생산품 품질향상을 재

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촉 소비자 보호운동 법률 대로 뒷받침한다.

第125條 [貿易의 育成]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 · 調整할 수 있다.
제125조 무역 육성 국가 대외 무역 규제 조정

第126條 [私企業의 國 · 公有化 또는 統制 등 禁止]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제126조 사사기업 국 공유화 통제 따위 금지 국방상 국민경제상 절실히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필요가 있어서 법률 경우가 아니고는 사기업 국유 공유 이전
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통제

第127條 [科學技術의 發展과 國家標準制度] ①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제127조 과학기술 發展 국가표준 제도 국가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정보와

人力의 發展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發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개발하여 국민경제를 발전하는 데에

② 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국가 국가표준 제도 세운다.

③ 大統領은 第1項의 목적을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대통령 제1항 목적 이루기 자문기구

第128條 [改正提案權] ① 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제128장 개정 제안권 헌법 개정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발의 제안

② 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 대통령 임기 연장 거듭말기 변경 헌법 개정 헌법 개정 제안 대통령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통령 효력

第129條 [改正案公告期間]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
제129조 개정안 공고 기간 제안 헌법 개정안 대통령 일 기간 공고
하여야 한다.

第130條 [改正案의 議決과 確定·公布] ① 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분의 2 이상의 賛成을 얻어야 한 일 안에 의결
제130조 개정안 의결 확정 공포 국회 헌법 개정안 공고 날부터
국회 의결 재적 의원 분 찬성

② 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舉權者 헌법 개정안 국회 의결 뒤 일 안에 국민투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投票과 投票者 과반수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③ 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賛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헌법 개정안 제2항 찬성 헌법 개정 대통령 곧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공포

자료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비정부단체 선언

(방콕, 1993. 3. 27)

1. 개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인권과 민주적 개발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110개의 비정부단체에서 파견된 약 240명의 참가자는 여성, 어린이, 원주민, 노동자, 지역개발 등의 문제를 대변하면서 1993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콕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아·태지역의 현재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임은 인권에 관한 아시아지역의 정부간 모임(1993. 3. 29~4. 2. 방콕)과 세계인권대회(1993. 6. 비엔나) 및 그 이후의 활동을 앞두고, 국제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와 제안을 제출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촉발되었다.

2. 문제제기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 고려사항을 뽑아내었다.

1) 보편성

우리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을 심화하는 데 이들 문화의 인간관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아·태지역 문화의 풍부함과 지혜로움을 포용하는 보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적 인권기준은 많은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성, 어린이, 소수자와 원주민, 노동자, 망명자와 피난민, 불구자, 노인 등과 같은 특수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인권에는 보편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옹호하지만,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무시하는 문화적 관행은 용납할 수 없다.

인권은 보편적 관심사이고, 그 가치가 보편성을 갖는 것이므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국가주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없다.

2) 불가분성

우리는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 의존성의 원칙을 수호하려고 한다. 이는 인권의 내용이 시민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 문화적이든지 상관없는 것이다. 인권 보호는 모든 개인과 집단과 관련이 있다. 인권의 향유는 공동체에 대한 다소간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날마다 일어난다. 이러한 침해에는 자결권의 박탈, 군사적 점령, 살해, 고문, 정치적 억압, 표현의 자유와 다른 자유의 억압이 포함된다. 한편 빈곤과 최소한의 필수품 결핍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민적·정치적·경제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종종 인권을 회생하면서까지 경제개발을 강조하는 데서 발생한다. 사회문화적 권리침해는 인권을 부자적인 것으로 다른 정치체계의 산물로 자주 일어난다.

경제적 권리는 자원과 수입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해방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예컨대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빈곤은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잘 이루지 못한 데서 일어난다.

인권에 관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접근이 요청된다. 한 종류의 인권이 다른 종류의 인권을 위해 거래될 수는 없다.

3) 인권으로서 여성의 권리

여성의 권리에 관한 쟁점은 인권논의 중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인권제도와 관행에서 계급, 카스트, 민족성을 통하여 판별되는 가부장제도는 여성에 관한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가부장제도는 일종의 노예제이고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여성의 권리는 사회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특히 가족 안에서 선언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존엄과 자결권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불가분적이고 평등한 경제적 권리—예컨대 농토, 집과 다른 자원,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제연합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강간, 성적 학대, 여성매매, 가정 내 폭력을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는 만연되어 있다. 여성에 대한 범죄는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데 실패한 정부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아·태지역에서 여성의 권리는 종교적·민족적 주체성을 군사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것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몇몇 국가는 이러한 침해가 종종 개인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평계로 이용하였다. 위기상황, 예컨대 인종폭력, 지역폭동, 무장충돌, 군사점령, 추방 등의 경우에 여성의 권리는 특히 침해된다.

국가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적절한 국제적 제도를 만드는 데 동의한 경우, 많은 나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유보조건을 둔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연대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결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국제적 연대를 이루기로 결의하였으며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인종이나 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민족적 기원에 따른 차별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국제적 연대는 국가주권을 주장하거나 국가의 국내문제 불간섭을 주장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 일국적 질서를 넘어선다.

5) 지속가능한 개발

어떠한 나라도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즉 외국의 지배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면 진정한 개발을 이룰 수 없다. 잘못된 개발이나 인권에 대한 대규모 침해의 주요한 원인은 아·태지역에서 제국주의가 지배한 결과이다. 진정한 개발의 전제조건은 이 지역에서 국가적 해방과 민족의 자결을 획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균형잡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인간개발의

극대화,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 평등과 사회정의, 수입의 분배와 공정한 자원배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여성, 어린이, 시골사람들, 도시의 빈민들, 소수자, 토착민, 망명자, 피난민, 노동자 그리고 그외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서로 다른 집단들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발모델은 잘못된 개발을 초래하였다. 민족해방을 저지하려는 활동과 정치적 군사적 억압에 항거하는 민중의 자결권이 개발의 구현과 관련한 주요한 양극점이다. 이러한 것은 지역적 특이성과 결합해 있지만 사실상 국경을 사이에 두 사람들간의 공통성을 고려해볼 때 국경은 때로는 자의적인 것이다.

한편 우리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서 국민의 요구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개발모형을 제건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구는 남녀 모두의 요구이며, 부채삭감, 국제적인 재정적·경제적·상업적 체제 개혁, 의사결정 과정의 더 많은 민주화를 포함한다. 다면적이든 양면적이든 국제원조기구와 재정기구의 역할은 많은 인권침해를 유발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정책과 행동에 의해 유발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국제적인 경제강국이 인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평등과 부존자원 면에서 남과 북의 분열이 엘리트주의와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놓고 있다. 시장의 권리 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개발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일으킨다. 시장의 권리(market rights)는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달러 1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착취할 자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 권리를 주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개혁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요망된다. 잘못된 개발은 가난과 수입불균등, 약탈, 수탈의 증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땅과 자원의 점령, 환경파괴가 그 귀결이고, 남녀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인간개발, 자유, 존엄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거시경제적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모두 그 귀결이다.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확립하고, 여성의 권리 부여 및 성적 평등을 증진하려는 절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개발과정을 민주화할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개발과 인간적 개발을 증진하는 것이다.

6)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단지 법률적이거나 형식적인 과정 이상의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

일정당이나 복수정당 선거에서 의례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 이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수준의 사람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 영향을 미칠 모든 토론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적,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성과 신뢰성 있는 절차와 제도 아래 모든 수준에서 국민이 권리 가지고 참여하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것은 훌륭한 통치, 타락의 추방, 국민에 대한 국가와 다른 당국의 책임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다수에 속하지 않는, 즉 소수자와 권한이 박탈당한 집단의 참여와 보호를 포함한다. 그것은 시골사람들과 그외 열악한 처지에 있는 집단을 위한 토지 및 사회정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가정에서 작업장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그 이상의 영역에서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퍼져 있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서 조장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7) 군사화

우리는 이 지역에서 점증하는 군사화와 이 목적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군사화는 시민사회와 파괴로 귀결되며, 자결권을 잠식하며, 사람의 자립할 권리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다. 때로 군사화는 자경단과 같이 민간인 집단의 외관을 갖기도 한다.

그것은 특히 원주민에게 해를 끼쳤으며 이주를 강요하였다. 그것은 성적 학대, 강간 그리고 무력충돌 과정에서 자행된 범죄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어린이에게도 특히 상처를 주었다. 이들은 체포와 고문, 철수명령, 집단살해, 실종, 기타 인권침해와 같은 쓰라린 사건들 때문에 신체적 건강,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부적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군사화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특정한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인종말살을 포함한 인종적 불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군사적인 면에서 미약했던 국가의 군사화는 초강대국이나 종교적 강대국에 의해 조장된다. 대량 살해무기의 판매를 통하여 이득을 누리는 것이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개발도상국의 잘못된 성장의 주요한 원인이다.

평화와 인권에 대한 요구는 탈군사화에 대한 요청과 결합해 있다.

8) 자결권

민족의 자결권은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법에 잘 정립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내

적 갈등의 깊은 기원은 이러한 근본적인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자결권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한 권리 덕분에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한다. 따라서 자결권에 대한 민족의 권리는 모든 정부에 의해 수호되어야 한다.

또한 자주적 결정이 반드시 국가상속이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주적 결정은 독립, 자유로운 연합, 독립한 국가와의 결합 그리고 대중적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도달된 그의 합헌적 조정 등을 의미할 수 있다.

9) 고문

아·태지역에 존재하는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는 점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상당수의 나라에서 피의자는 '자백'을 얻으려는 범죄행요원에 의해 고문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관행은 범죄를 통제하는 데 값싸고 편리한 방법으로 취급되어, 몇몇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위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치유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치유라고 함은 고문희생자의 재활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책임자의 처벌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10) 표현의 자유

이 자유는 많은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이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및 민주주의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독립된 언론매체가 없다. 사람들은 공포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수감되며, 살해된다. 표현의 통로를 제한하는 핑계거리는 종종 국가안전, 법과 질서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권위주의의 외피이며 민주주의적 열망을 억압하기 위한 외피이다.

11) 인권교육과 훈련

지금까지 인권교육과 훈련은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내용에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문맹도 여전히 광범위하다.

학교의 교과목은 지배엘리트에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격려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교육과 훈련은 예방적 및 치유적 영향을 미친다. 즉, 이것은 사람들에게 배상의 가능성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권리에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막도록 하는 힘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정부 및 비정부 계획하에 종합적인 인권교육 및 훈련을 발전시켜야 한다.

12) 원주민

아·태지역은 많은 원주민의 본거지이다. 이러한 원주민에게 기본적인 쟁점은 많은 것이 정부에 의해 토착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원주민들은 적절한 국제인권기구 아래에서 보호받아야 될 그들 특유의 문화적 주체성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한 정부 — 남이나 북으로부터 혹은 동시에 혹은 국제적 금융기구와 다국적 조직 — 애 의해 자행된 민족살해, 인종살해의 희생자이다. 현재 이용될 수 있는 국제적 법률제도는 집단적인 인권보호를 보장하기에는 취약하다.

이 지역의 많은 곳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여타 권리들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중에는 토지 몰수 및 약탈, 무장충돌, 피난민으로 추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무력에 의한 박해 및 억압과 함께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때로는 관광업이 상업적인 취취를 통하여 원주민의 생활양식을 파괴하기도 한다.

13) 어린이

어린이의 학대와 착취가 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것에는 어린이노동, 노예 및 성적 학대, 어린이 매춘, 어린이의 판매 및 거래행위, 무력충돌 상황의 어린이, 수감된 어린이,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어린이 또는 모든 것을 박탈당한 어린이, 가족분열이나 해체와 더불어 집안에서 학대받는 어린이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 영양공급, 교육, 보호장소, 참여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사항조차 종종 충족되지 않는다. 에이즈의 출현은 어린이를 더욱 궁지로 밀어넣었다.

어린이의 권리가 많은 상황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다. 초기에 어린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체제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즉 지난, 영양부족, 질병,

교육 부족 등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어린이의 성장을 가로막고, 이들로부터 어린시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다.

큰 흐름은 여자어린이에 대한 차별, 군사화, 왜곡된 개발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비록 많은 나라가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지만 그 집행은 여전히 미미하다. 즉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 가족을 지원하려는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보다 입에 발린 소리에 그치는 것이다.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구체화된 것과 같이 생존, 보호, 개발 그리고 참여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 집행이, 국가의 능력과 국가의 안전에 관한 고려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14) 노동자

아·태지역 노동자들은 받아들일 만한 인권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지역에서 최악의 인권침해를 감내하고 있는 것은 상당수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지도자이다. 연대할 자유와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는 몇몇 국가에서는 극히 제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는 인권이 공장과 작업장에서 무시되고 있다. 여성, 이주민, 노예노동자,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비공식적이고 비조직된 부문의 경우 노동자의 인권은 훨씬 더 열악하다.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 특히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는 이 지역에서 자주 무시된다.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적 조직이나 기구는 때로 경제적 자유라는 명분 아래 이러한 권리를 잠식하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노동자의 권리침해 중 상당수의 것은 남쪽에 대해 인권을 외쳐대는 바로 그 북쪽 국가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15) 망명자와 피난민

망명자와 피난민문제는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억압, 무장충돌, 민족불화 그리고 기타 요인과 서로 결합되어 있다. 경제적 요인도 또한 생활근거지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이 거의 없다. 그들의 처지는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국내적, 국제적 기구의 부족과 관계가 있다.

망명자와 피난민의 안전은 제한적인 정부정책과 차별정책으로 종종 위기를 맞는다.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가도록 강요받지 않을 망명자의 기본적 권리는

자주 침해되고 있다. 망명자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정립된 절차는 자주 결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본국으로의 자발적인 복귀도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망명자와 피난민의 인권은 자주 제한적인 국가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억압된다.

적절한 망명기구에 대해 동의한 국가는 거의 없다. 이는 국제인권기준을 승인하고 상황을 국제적으로 설명하는 데 대한 외면을 뜻하는 것이다.

16) 퇴보

몇몇 나라는 인권 퇴보를 통하여 인권의 향유를 제약하려고 한다. 때로는 민간정부의 의관을 갖기도 하지만, 군사화, 군사점령 및 통치가 확장되면, 인권에 대한 그 부정적 영향 때문에 시민사회의 공간은 축소된다.

우리는 국가가 국가안전, 법, 질서 등을 이유로 인권기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국가가 모든 상황에서 인권을 총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17) 인권활동가·옹호자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포함하여 인권활동가·옹호자 — 인권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 — 와 이 지역 내 사회운동에 대해 점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이들은 자주 협박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살해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비정부단체를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집단은 민중의 이익을 외치고, 그 진보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유롭게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즉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권리와 인권의 모든 것을 향유할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18)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성

많은 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 행정이 권위적 요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이는 인권기준과 대립되는 다양한 국내법과 결합해 있으며, 특히 차별정책, 불평등 그리고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데 일부 판사들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과 결합해 있다.

법률체제는 많은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사람들이 재판체제에 접근하는 문제에 주요한 의문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구조, 지원, 법적 지식의 유포와도 서로 얹혀 있다.

우리는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민중이 재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을 요청한다.

3. 생활

참석자들은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다.

- 점증하는 정부당국의 불법
-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활동
- 남녀 존엄을 포함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향상시키는 데 실패
- 자결권에 대한 위협
- 경제권을 포함하여 남자 위주의 정치로 인한, 여성인권에 대한 무시와 끊임없는 침해 및 여성의 능력과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의 부당성
- 경제적 빈곤, 사회적 문화적 압박, 범죄, 소비주의, 군사화로 인한 어린이 인권의 침해
- 점증하는 환경 파괴와 자연자원의 고갈
- 민족분쟁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무장충돌의 확산
- 살인 · 실종 · 고문에 의한 정치적 억압, 정치범 그리고 자결권 ·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억압
- 건강권의 침해와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고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열악한 건강보호체계
- 인권침해의 생존자들에 대한 건강서비스의 부정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공격
- 이민 노동자들의 비보호
- 농촌사회에 대한 위협
- 인도주의적 기능을 실천하는 건강이나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공격
- 광범위한 성적 착취
- 극단주의와 혼재된 종교적 불관용과 차별의 다른 형태
-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및 기타 구제의 결여

- 인권을 침해한 자의 형사면책
- 대중매체를 이용한 수많은 강요
-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돋는 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
- 원주민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민족적 압박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적당한 보호
- 최하층 빈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
- 증가하는 수많은 망명자 및 피난민과 그들에 대한 위협, 특히 피난민을 보호하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절차의 결여로 인한 위협, 그들 인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피난처와 안식처를 찾으려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위협
- 육체적 정신적 차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
- 노인의 복지와 지원의 결여
- 에이즈의 증가와 상대적 차별
- 마약의 확산 및 그것과 관련된 이용
- 낮은 교육수준, 특히 기본인권 정보의 비효율성, 자각과 기술의 결여
-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동의를 너무나 많이 유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의 결여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규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 국제인권체계에 대한 개인 및 NGO의 접근이 제한되는 점
- 독자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정부간 차원의 기구의 결여

4. 아·태지역의 정부활동에 대한 권고안

1) 일반권고

아·태지역 민간단체 대표들로서 우리는 아·태지역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① 다음 사항에 의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보호 증진할 것
 - NGO선언에 제의된 인권과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호 연관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
 -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수자, 원주민, 비조직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의 집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

②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법률, 정책, 관행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

③ 개발전략은 지속적이고 동등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야 하고, 자연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모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자유와 존엄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것

④ 인권, 특히 여성인권을 제한하는 관행과 극단주의에 반대할 것. 특히 독립된 존재로서의 여성을 부인하는 법률, 정책, 종교 문화적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운동, 대중교육, 장기간의 개발과 같은 수단을 취할 것

⑤ 국제연합세계인권대회 전에 억압적 법률을 개혁하고, 임의적인 체포를 없애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함으로써,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모든 정부수준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훌륭한 정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체계를 민주화함으로써, 국가안전과 법률, 명령에 의해 강요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제거할 것

⑥ 무장충돌의 근본원인인 외국의 지배,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토지의 박탈과 권리의 박탈 그리고 지배층의 외세와의 결탁을 제거할 것

⑦ 무기구입을 줄이고 군사비용을 개발과 인권의 증진·보호·예방, 기구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체할 것. 그리고 협의과정과 사회적 서비스, 평화적 토론문화를 정착시킬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 어린이, 소수 원주민, 조직·비조직 노동자, 피난민, 망명자, 농민, 기타 소외계층을 고려할 것

⑧ NGO를 포함한 인권활동가 내지 운동가의 활동과 합법적 사회운동을 보장할 것.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격과 위협, 나쁜 관행을 중단하고 이러한 사회변화의 매개작용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

⑨ 민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법적인 도움과 지원의 효용을 포함한 법적 수단 및 다른 장치를 통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제시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할 것. 그리고 법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인권침해자의 형사면책에 반대할 것

⑩ 무기구입을 줄이고 군사비 예산을 인권개선과 보호로 돌림으로써, 또한 다른 재원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인권이 국가예산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할 것

⑪ 정보제공을 늘리고 자각과 기술의 개발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인권교육과

훈련을 증진할 것. 그 지역의 문화적 부를 이용한 참여학습방법을 통해 인권의 보편적 기준의 증진과 보호에 공헌할 것이다.

2) 특별권고

우리는 아·태지역의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①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과 다음의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할 것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1, 2차 선택의정서
- 고문금지 규약
-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CEDAW)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
-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조약
- 망명자의地位에 관한 조약
-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약
- 국제노동기구의 조약들
- 소수자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

② 유보조항, 특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조약과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조약에 적용되는 유보조항을 철폐하고 모순되는 유보조항을 제거하고, 유보조항의 완전성을 재검토하는 데 필요한 신속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의 완전성을 보장할 것

③ 고문금지조약에 관하여 제안된 선택의정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The Draft Declaratio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비준할 것

④ 다음 사항을 위하여 국내입법을 만들거나 수정할 것

- 이러한 국제적 의무, 특히 평등과 차별폐지의 조항을 승낙할 것. 그리고 단체와 사람들의 관습법과 국가의 법률 사이의 모순들을 인권의 보편성, 즉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는 것
- 여성, 어린이, 농민, 노동자, 모든 소외계층의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것
- 종교적 조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

⑤ 조직적인 성폭력과 고문,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실종, 초법적인 강제처형과 임의적 구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치적 억압을 즉각 중단할 것

⑥ 인권침해의 희생자, 특히 고문 희생자와 죄수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

⑦ 정치범, 고문 희생자, 망명자, 피난민에게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할 것

⑧ 국가에 의해 시인 내지 지원된 조직적인 침해, 즉 고문, 성적 노예(devadasi(신의 노예)체제의 희생자를 포함), 강제노동, 비자발적인 실종, 임의적 강제집행, 경찰과 군의 압박, 정치적 억압, 부당한 구금과 국내적 이주민의 희생자의 가족과 그 생존자에게 원상회복을 포함한 보상과 배상 그리고 완전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것

⑨ 아·태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어떤 발의도 환영하지만 그러한 수단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지역위원회가 마련되면 국제인권장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조약, 고문금지조약, 개발에 대한 권리선언과 기타 인권과 관련된 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따라야 한다.

- 지역위원회 회원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조약을 최우선적으로 비준하거나 동의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회에 대한 개인 또는 NGO의 청원은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한 청원이나 탄원이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국제연합기구에 동시에 탄원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정부 내의 공직을 겸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위원은 NGO와 협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 인권조항의 이해에 관한 정부의 정기적 보고체계에서 보고서 초안 작성에 NGO가 참여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회 회의와 토론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군대, 국가안전보장 권력을 포함하여, 어느 정부 요원이나 혹은 정부의 어떤 활동도 심사와 조사 대상에서 면제될 수 없다.

- 지역위원회는 완전한 감사권을 가져야 한다.

- 제소를 심리할 분리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⑩ 공개적인 합의에 따라, 특히 정부관리와 고용인, 법집행 관리를 위하여 고안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하여 성적 평등의 관점

에 입각한 국가정책을 채택할 것. 모든 교육기관의 과목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인권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특히 강조할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GO가 인권교육과 훈련을 잘 실행하도록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⑪ 인권조약과 기구에 관련된 자료를 아·태지역의 각국 언어로 번역하고 홍보할 것.

4. 국제연합에 의한 조치

1) 국제기구

① 우리는 성차별을 제거하고 성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제연합의 모든 인권제도를 성적 평등의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의 사안들이 국제연합의 조약기구, 사안별 국가별 보호자 및 실무위원회, 독립 전문조사단 그리고 자신의 직무 내에서 인권보호를 위임받은 모든 기구들의 모든 보고서와 문서 등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②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을 환영하며, 이 초안이 총회에서 채택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세계인권대회가 여성의 권리를 인권의 일종으로 승인하며 성차별의 죄악의 형태로서 공과사를 불문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앨, 보다 실효적인 집행절차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에 대한 보충조항을 두어 태아의 성별 결정에 생물학적 조정을 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또한 "성착취반대 협약"의 초안을 도입함에 있어 여성 인신매매 반대연합의 제안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③ 우리는 국가비상사태시의 인권상황의 악화를 사무총장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를 각국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④ 우리는 비상사태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악화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비상사태에 관한 국제연합 보고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⑤ 우리는 국제연합세계인권회의가 현재의 선언을 구체화하는 “개발권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인권옹호자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채택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⑥ 우리는 인권에 관한 현재의 정의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고문에 대한 정의, 강간의 범위, 강제이주와 전쟁범죄의 하나인 정주지 파괴가 포함되어야 하며, 성적 회통, 근친상간, 인신매매 및 매춘을 포함한 성적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⑦ 우리는 국제연합이 반인륜적인 범죄인 불가촉 천민에 대한 관습과 카스트 제도, 종교 및 기타의 요인에 의한 차별을 2000년 안에 근절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개발계획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⑧ 우리는 국제연합이 원주민의 탈식민화를 즉각적으로 실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실효성

우리는 국제연합 기능의 괄목할 성장을 요망하여 인권개선 및 보호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아래와 같은 새로운 대응기구 및 조치의 수립을 요청한다.

① 자결문제를 다룰 국제연합 특별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기구는 사무부총장의 관할하에 있게 될 것이다.

②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한 정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③ 국제연합기구에 대한 개별적 접근의 보장과 개별적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것—이 목적을 위해서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 내에 개별적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선택의정서 초안작성 방법의 대강을 정할 실무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④ 아래의 방식을 포함하여 조약감시기구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 국가의 의무수행 및 미수행 정도에 관한 명확한 보고서를 요구할 것
- 국가보고서의 제출, 특히 기밀 내 제출을 요구할 것
- 국가와 비정부단체간의 협의 및 (비정부조직의 동의하에) 국가보고서내 비정부조직의 보고서를 포함할 것을 장려할 것
- 공식적으로 비정부조직에 정부보고서에 상응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할 것

· 각 회의과정을 완전히 공개할 것

⑤ 현행 국가별 사안별 보고자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며 이를 기구의 실효성을 증대시킨다.

· 보다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한다.

· 실행권고안에 대한 각 정부의 이행 여부를 추적 조사할 체계적 방안을 마련한다.

·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다.

· 국제연합 대표단, 보고자, 실무위원의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⑥ 인권에 관한 소위원회에 활동하는 위원들은 (정치가나 외교관 같은) 정부직에서 선발하지 못하며 학계, 비정부 단체, 언론기관 또는 기타 관련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선출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며, 후보자는 출신국이 아닌 타 국가로부터도 지명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⑦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 특별판무관을 인권보호와 관련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조화, 조정을 할 새로운 고위 정치기관으로 설치한다.

⑧ 상설적 지위와 감시기능을 갖는 국제연합원주민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원주민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한다.

⑨ 원주민에 대한 차별을 의제의 상설항목으로 포함시켜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향상시킨다. 또한 절차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다른 기구에서도 제기한다.

⑩ 상황이 위기로 악화되기 전에 국제연합이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계’를 통하여, 사무총장 외 특별대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긴급 상황에 인권담당 사무부총장이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긴급행동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기구를 개선한다.

⑪ 인권침해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강제관할권을 갖는 상설국제인권재판소를 설치한다.

⑫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한다. 이 법원은 개인도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법원에 전쟁범죄, 반평화죄와 국제적·국내적 무력분쟁시에 일어나는 성과 관련한 학대 등을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배상조치를 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⑬ 강제적 매춘을 포함한 군대의 잔혹행위를 심판할 전쟁범죄 법정을 아시아 지역 내에 설치한다.

⑭ 원주민의 권리, 성차별 및 성폭력, 아동의 권리, 여성의 인신매매 등의

문제에 관한 특별 보고자를 설치한다. 이 보고자는 정부와 비정부 단체 및 정부간 기구로부터 정보를 받아 조사보고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그 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성폭력에 대한 보고자는 여성지위위원회에도 또한 보고를 해야 한다.

⑯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보고되고 있는 아·태지역 내의 국가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다.

⑰ 국제연합직원 및 독립된 전문가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훈련을 한다.

⑱ 성평등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모든 권고적 활동 속에 통합한다.

⑲ 국제연합예산의 최소 5%를 인권활동에 할당한다.

⑳ 개회기간의 연장 및 지원단의 추가적 제공을 통하여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고문희생자를 위한 국제연합자발기금과 같은, 국제연합인권기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증대시킨다.

㉑ 국제연합의 감시 및 조사보고활동, 이의제기 절차와 그에 따른 권고활동, 여성·아동·원주민에 대한 권리침해 제출과 관련한 훈련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3) 인권교육과 훈련

우리는 국제연합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① “인권교육과 훈련을 위한 민중의 10년”을 선언하라.

② 인권교육과 훈련을 접두할 기구 — 가능한 한 관련조약의 감시기구에 의한 — 를 제공하라.

③ 비정부 단체를 포함하여 각국을 위한 인권교육 및 훈련활동을 위한 국제기금을 설치하라.

④ 각 국제연합기구들로 하여금 1995년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그들이 여성인권에 쏟는 조치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을 검토하도록 하라.

⑤ 원주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공식의제가 되도록 하라.

4) 민주화

우리는 국제연합의 중요절차가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민주화될 것을 권고한다.

① 안전보장이사회와 민주화 특히 거부권 및 상임이사국 자격 폐지 및 총회로 추가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군대에 의한 강제적 매춘과 같은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기 전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② 여성·아동·원주민·노동자 등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집단들의 관심사와 체험 그리고 투쟁들이 국제연합의 모든 기구와 그 기구에서 현재 진행중인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는 구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그들에게 자문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지역회의 및 세계인권대회의 의제로 포함하며 회의에서의 발언을 위한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아·태지역 내 정부 상호간에 인권문제를 다룰 구조적 방안이 없음을 고려하여 우리는 아시아 및 그밖의 모든 지역에서 비정부 단체가 국제연합인권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국제연합인권위원회가 개발하여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우리는 매년 8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태지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할 것을 인권소위원회에 요청한다. 비정부 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제사회이사회의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신임 결정은 항상 다수결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경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④ 국제연합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적·인적·재정적 자원을 이용하게 하여 인권에 관한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승인·조장·지원한다.

5) 특별기구

국제연합제도 및 그 특별기구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연합과 남과 북의 각국 정부가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감시·규제 및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①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그밖의 다자간 및 양자간 조약에 의한 기구들의 정책이 국제연합·국제노동기구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하라.

②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 및 비공식 노동운동단체들을 보호하라. 그 방안으로 비조직화된 부문,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정책사항과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과 관련한 동기구의 정책사항을 강화하며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와 점령지구 내 노동자의 축출 또는 강제이주 관행에 대한

상황보고를 한다.

③ 아·태지역에서 행동하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제노동기준에 합치되도록 하라.

④ 성과 관련한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국제연합대표단, 직원 및 실무자들의 책임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절차를 보장하라.

6) 군무화

우리는 각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① 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의 생산·판매·전시 및 광고와 모든 종류의 군사훈련을 즉각적으로 종결시키는 조치를 취하라.

② 현존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해체와 아·태방어 명목의 군사훈련 및 자국민과의 전투를 위한 서방 군사고문관 및 안전요원의 채용을 중지하라.

③ 군사예산을 개발수요, 보다 나은 인권침해 방지기구, 인권보호를 위한 자문절차, 사회적 급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해 재분배하라.

④ 모든 준군사력을 해산하라.

⑤ 아·태지역은 외국의 군기지를 유치하지 않으며 핵무기 및 핵시설을 보유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⑥ 군사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⑦ 국제연합평화유지군의 활동, 긴급대응 조치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무혈충돌 또는 민족간 충돌의 상황에서 성원 전체가 특별히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보장할 것과 여성 및 아동에 대해 취해진 조치의 영향 및 남성군사요원의 군사훈련 및 거동이 현지 여성에 대해 끼치는 효과를 보고 제출할 것.

⑧ 인도주의적인 국제법에 위반한 채 구금하고 있는 모든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석방하라.

⑨ 모든 시민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보장하라.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자료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1993. 6. 25)

제1부

전문 1

인권의 신장과 보호는 국제사회에 맡겨진 우선적 과제이며, 세계인권대회는 이들 권리의 보다 완전한 준수를 고양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인권체계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들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식으로 수행할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문 2

모든 인권은 인간에 고유한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하며, 인간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의 중심적 주체이므로 인간이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실현에서 주요한 수혜자가 되어야 하고 그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인정하고 확인하며,

전문 3

1. 이들 권리와 자유들이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과 원칙에 기여함을 재확인하고,
2.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비롯하여 국제연합헌장 제55조가 규정한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을 발전시킬 것을 적절히 강조한 제56조에 포함된 공동행동 및 개별행동을 취한다는 서약을 재확인하며,

3. 국제연합헌장에 합치하도록 인종, 성별, 언어나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을 존중·향상시키고 고무해야 할 각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전문 4

국제연합헌장 전문 특히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 및 대소민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결정을 상기하면서.

전문 5

전화로부터 후손들을 구하고, 정의와 조약 기타 국제법의 법원에서 유래하는 의무들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확립하고, 보다 많은 자유와 함께 하는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며, 관용과 홀륭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민족의 경제적·사회적 진보의 촉진을 위한 국제적 장치를 채택하기로 한다는, 국제연합헌장 전문에 표현된 결정을 재차 상기하면서,

전문 6

모든 국민들과 모든 민족들이 달성해야 할 보편적 기준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은 영감의 원천이며, 또한 이는 국제연합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기존의 국제 인권법규들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정립에서 성과를 얻는 데 기초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전문 7

1. 국제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변화들과,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평등권과 민족자결의 원리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고무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연합헌장에 체화되어 있는 원칙들, 평화, 민주주의, 정의, 평등, 법의 지배, 다원주의, 발전, 보다 나은 생활수준과 연대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모든 민족들의 열망을 고려하면서,
2. 세계 도처에서 여성들이 계속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전문 8

인권분야에서 국제연합장치를 강화하고 국제인권 기준들의 준수에 대한 보편적 존중이라는 목표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국제연합 활동들이 합리화되고 강화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전문 9

튀니지, 산호세 및 방콕에서 있었던 3개 지역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들과 각 정부들의 기고들을 고려하며, 세계인권대회에 앞선 준비과정 동안에 독립된 전문가들이 마련한 연구들뿐만 아니라 정부간 조직 및 비정부 부문 조직들의 제안들에 유념하면서,

전문 10

1. 1993년을 세계원주민의 해로 국제적으로 정한 것에 대해, 원주민들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보증하고 그들 문화와 양식이 가진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국제사회의 헌신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환영하며,
2. 국제사회가 모든 인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현재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그에 대한 도전과 그로부터 전세계에서 생겨나는 계속적인 인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들을 고안해내야 하다는 점 역시 인정하면서,

전문 11

세계 각 민족과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고 보편적인 향유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들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전세계적인 과업에 다시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정신과 현실에 호소하면서,

전문 12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온 국제적 협력 및 연대의 노력에 의한 인권보장 노력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헌신에 새 발을 내딛기로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염숙히 채택한다.

제2부

1절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국제연합헌장, 기타 인권관계 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와 보호를 진전시키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엄숙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본질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같은 틀 안에서, 인권분야에서의 국제협력증진은 국제연합의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는 데 필수적이다.

1절의 2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가진다. 그들은 자결권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식민통치 또는 기타 형태의 외세 지배나 점령하에 놓여있는 민족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세계인권대회는 불가양의 민족자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연합헌장에 합치되는 모든 정당한 행동을 취할 각 민족의 권리로 인정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자결권의 부인을 인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며, 자결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강조한다.

1970년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에 따르면 이러한 자결권은, 평등권과 민족자결 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 영토에 속한 모든 인민을 차별없이 대표하는 정부를 가진 주권독립국가의 영토의 완전성이나 정치적 통일을 총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행동을 정당화 또는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1절의 3

외국의 점령하에 있는 인민과 관련하여 인권기준의 이행을 보장하고 감시하는 효과적인 국제적 수단이 취해져야 할 것이며, 인권규범과 국제법, 특히 1949년 전시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정, 그리고 기타 적용 가능한 인도적 법규범에 따라 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절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는 마땅히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특히 국제협력의 목적에 비추어 국제연합의 우선적 목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같은 목적과 원칙의 틀 안에서, 모든 인권의 신장과 보호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기관들과 전문부서들은 국제적 인권법규들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적용을 바탕으로 그 활동의 통일을 더욱 제고해야 할 것이다.

2절의 2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모든 인류의 천부적 권리이다. 따라서 그 보호와 신장은 정부의 일차적 책무이다.

3절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과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 국제 사회는 인권을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또 동일한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한다. 물론 민족적·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문화적·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에 유념해야 하겠지만,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체계를 떠나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4절

인권 신장과 보호 절차는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법에 합치하여 행해져야 한다.

5절

민주주의, 개발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강적이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체계를 결정하려는, 자유로이 표현되는 인민의 의사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인민의 완전한 참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는 보편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전세계에서 민주주의, 개발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와 증진을 지원해야 한다.

5절의 3

세계인권대회는 아프리카의 다수 국가를 포함하여 민주화와 경제개혁의 과정에 있는 최저개발국들이 민주화와 경제개발에 성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6절

1. 세계인권대회는 개발권 선언에서 확립된 개발권이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기본적 인권의 불가결한 부분임을 재확인한다.
2. 개발권 선언에서 언명된 바와 같이, 인간 개인은 개발의 핵심주체이다.
3. 개발은 모든 인권의 향유를 조장하지만, 개발의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의 박탈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
4. 각국은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의 장애 제거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개발권의 실현과 개발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5. 개발권의 실현을 향한 지속적인 진전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공정한 경제관계 및 합당한 경제환경뿐만 아니라 국내적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필요로 한다.

6절의 2

개발권은 현세대와 다음 세대의 개발 및 환경상의 필요를 공정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유독·위해물질 및 쓰레기의 불법적인 처리가 궁극적으로 모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됨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유해·위험제품 및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기존의 협정들을 채택하여 정력적으로 이행하고 불법처리 방지에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사람은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대회는 일정한 진보, 특히 생의학과 생명공학 및 정보기술의 일정한 진보가 잠재적으로 개인의 완전성, 존엄과 인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보편적 관심사가 되는 이 영역에서 인간의 권리와 존엄이 완전히 존중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요청한다.

6절의 3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사회가 자국 민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개발도상국 정부들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들 나라의 외체부담 경감을 돋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7절

각국과 국제조직들은 비정부 부문 조직과 협력하여 국내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인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를 보장할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 국가는 이들 권리의 향유에 대한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권침해와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7절의 2

만연한 극빈상태의 존재가 인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향유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의 즉각적 경감과 궁극적 제거는 마땅히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8절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차별없는 존중은 국제인권법의 근본원리이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그와 관련된 불관용의 신속하고도 포괄적인 제거는 국제사회의 우선적 과제이다. 정부는 이것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체, 기관, 정부간 조직과 비정부 부문 조직들 그리고 개인들에게 이같은 해악에 맞서서 협력하고 그 활동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8절의 2

세계인권대회는 인종차별정책 철폐에서 이루어낸 진전을 환영하며, 국제사회와 국제연합이 이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평화적인 인종차별정책 철폐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계속해서 자행되는 폭력행위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8절의 3

테러리즘의 행위와 방법 및 관행의 모든 형태 및 발로와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테러리즘과 마약거래의 연계는 인권, 기본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영토의 완전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정당하게 구성된 정부를 교란하는 활동이다. 국제사회는 테러리즘의 방지 및 대적을 위한 협력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절

여성 및 여아의 인권은 보편적 인권의 불가양, 불가결, 불가분한 부분이다. 국내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정치적·시민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대한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 그리고 모든 형태의 성차별의 근절은 국제사회의 우선적 목표이다.

문화적 편견과 국제인신매매에 기인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성별에 기초를 둔 폭력과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 및 착취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근절되어야만 한다. 이는 법적 수단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개발, 교육, 모성보호, 보건, 사회부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국내행위와 국제협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여성의 인권은 모든 여성관련 인권법규의 촉진을 포함한 국제연합 인권활동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정부, 기관, 정부간 조직 및 비정부 부문 조직들에게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10절

소수집단의 권리신장과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소수집단 거주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대한 그러한 신장과 보호의 기여를 고려하면서,

- 세계인권대회는 민족적·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에 따라 소수집단이 차별없이 법 앞에 완전히 평등하게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각국의 의무임을 재확인한다.

소수집단은 자유로이 간접이나 차별없이 그들 고유의 문화를 누리고, 고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행하며, 모든 공적 사적 영역에서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11절

세계인권대회는 원주민의 고유한 존엄성과 사회의 발전 및 다원성에 대한 그들 특유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들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복지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성과를 향유하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강력하게 재확인한다. 각국은 사회 모든 부문에서, 특히 원주민들과 관련된 문제에서 원주민들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원주민들의 권리 신장과 보호의 중요성, 원주민 거주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에 대한 그러한 신장과 보호의 기여를 고려해볼 때, 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평등과 무차별을 기초로 원주민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일치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들 고유의 양식, 문화, 사회조직의 다양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12절

세계인권대회는 많은 국가들에 의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정의 조기 비준을 환영하며, 세계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계획 속의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면서, 1995년까지 협약을 전세계적으로 비준할 것과, 당사국들이 필요한 모든 입법적·행정적, 기타 수단들을 동원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배정함으로써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행동에서, 아동에 대한 무차별과 아동의 최대한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방어와 보호, 특히 여아, 기아, 부랑아, 아동포르노, 아동매춘 내지 장기매매를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동,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으로 희생되는 아동, 난민아동, 수용아동, 무력분쟁 속의 아동, 기근과 홍수 기타 재난에 희생된 아동에 대한 방어와 보호를 위해 국내적·국제적 장치와 계획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연대가 증진되어야 하며, 아동의 권리는 국제연합의 범체계적인 인권활동에서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아동의 인격이 완전하고 조화롭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보다 광범위하게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12절의 2

사회 모든 부문에의 적극적 참여를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

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12와 13 사이의 삽입절

세계인권대회는 차별없이, 모두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권리뿐만 아니라 박해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인권선언,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정과 그것의 1967년 의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지속적으로 많은 난민을 자국 내에 받아들여 대접해준 국가들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임무에 대한 협신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근동지방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국제연합구호사업국에도 감사를 표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무력분쟁을 포함해서 난민을 발생시키는 많은 복잡한 요인들 속에서 심한 인권침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세계인권대회는 세계적인 난민위기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국제연합현장, 관련 국제법규와 국제적 연대에 따라 그리고 고통분담의 정신에서, 당사국들과 관계기관들과의 조정 및 협력에서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요구를 염두에 둔 국제사회에 의한 포괄적인 접근이 요청됨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일차적으로 국제난민대회에 의해 채택된 해결책을 비롯해서 품위있고 안전한 자발적 본국송환이라는 우선적 해결책을 통한 영속적인 해결책뿐만 아니라 망명자와 난민 이동의 근본원인과 결과를 알리는 전략의 개발, 비상대책 및 대응 체계의 강화, 여성과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염두에 둔, 효과적인 보호와 원조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가 특히 원인제공 당사국의 책무를 강조한다.

포괄적 접근으로서, 세계인권대회는 정부간 조직 및 인도적 조직에 의한 관심을 포함한 특별한 관심과, 자발적이고 안전한 본국송환 및 사회복귀를 포함하여 국내 난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영속적 해결책의 모색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제연합현장과 인도적 법원칙에 따라, 모든 자연적 재해와 인재의 희생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13절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취약해진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인권 보호와 신장,

그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그리고 기존 인권법규의 강화와 더욱 효과적인 이행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각국은 국민들 중 취약부문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보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적 수준에서 특히 교육, 보건, 사회부조 영역에서 충분한 조치를 창안하고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13절의 2

세계인권대회는 극빈과 사회적 배척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것과 극빈자의 인권을 신장하고 극빈과 배척을 종식해서 사회발전의 성과에 대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개발과 관련된 조치들을 포함해서 극빈과 그 원인에 대한 인식 증진을 달성하는 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각국은 필수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극빈자들의 참여, 인권의 신장 그리고 극빈과 싸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장려해야 한다.

14절

세계인권대회는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과정인 인권법규의 법전화작업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며, 인권조약의 전세계적 비준을 촉구한다. 각국에게 이러한 국제규약에 가입할 것과 그 경우 가능한 한 유보를 두지 말 것을 장려한다.

15절

각국은 인권에 대한 불만이나 침해를 시정할 효과적인 구제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법집행기관 및 소추기관을 포함한 사법운영, 특히 국제인권법규들에 담겨 있는 합당한 기준들과 완전히 합치하는 독립된 사법부와 법률가는 인권의 완전하고 무차별적인 실현에 필수적이고 민주주의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정에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맥락에서 법운영과 관련된 제도들에 적절한 재원을 공급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향상된 수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법운영의 달성을 위한 우선적 기초에 관한 자문제공 특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국제연합의 임무이다.

17절의 2

세계인권대회는 대량의 인권침해, 특히 망명자와 난민의 대량탈출을 가져온

대량학살, '인종청소' 와 전쟁시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강간에 대해 경악을 표한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그런 범죄를 자행한 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그같은 관행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재차 언급한다.

19절

세계인권대회는 국제인권법규와 인도적 법률 속에 담겨있는 기준들을 무시한 채 세계 전역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그 희생자들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구제책의 결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민간인 특히 여성·아동·노인·장애인을 해치는, 무력분쟁 중의 인권침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대회는 각 국가와 모든 무력분쟁 관련 정파들에게 국제협정에 규정된 인권보호를 위한 최저기준뿐만 아니라 1949년 제네바협정 및 기타 국제법적 규율과 원칙 속에 제시된 인도적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세계인권대회는 1949년 제네바협정과 기타 주요 인도적 국제법에 제시된 인도적 단체들의 도움을 받을 희생자의 권리를 재확인하며, 희생자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 안전하게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19절 A

또한 세계인권대회는 대량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인권의 완전한 항유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상황이 세계 각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경악과 비난을 표명한다. 그러한 폭력과 장애에는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처우와 처벌, 자의적인 즉결처형, 실종, 무단감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과 인종차별정책, 외세의 점령 및 지배, 외국인 혐오, 빙곤, 기아와 기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부인, 종교적 불관용, 테러리즘, 여성차별, 법 지배의 실종이 포함된다.

19절의 2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에서 국제법과 국제연합헌장에 합치되지 않는 일방적 조치를 삼갈 것을 요청한다. 이는 국가간 교역관계에 장애가 되며,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된 인권, 특히 식량, 의료, 주거 및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해서 건강과 복지가 충족된 삶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

을 방해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식량이 정치적 압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해둔다.

19절의 3

세계인권대회는 인권문제를 고려할 때 보편성, 객관성, 비선별성 보장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20절

세계인권대회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및 기타 국제적 인권법규에 명문화된 것처럼, 국가는 교육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목표로 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권교육프로그램 주체의 구체화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각국이 그렇게 하도록 요청한다. 교육은 국가와 모든 인종집단, 종교집단간의 이해, 관용, 평화, 우호관계를 증진해야 하며, 이들 목표를 추구하는 국제연합활동의 발전을 고무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과 적절한 이론적 실천적 정보의 보급이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없이 모든 개인에 관한 인권의 신장과 존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국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 교육정책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자원의 제약과 제도적 불비는 이러한 목표의 즉각적인 실현을 방해할 것임을 강조한다.

21절

우리는 지원을 구하는 국가들을 원조하고 각 개인이 보편적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 국제연합체제뿐만 아니라 기타 다국간 조직들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선거지원, 훈련을 통한 인권의식화, 교수와 교육, 대중참여와 시민사회를 뒷받침하는 국내입법, 국내제도 및 관련 하부구조들의 확립·강화를 목표로 하는 계획들에 할당되는 자원을 크게 중대시켜야 한다.

인권센터 아래서 이루어지는 자문제공과 기술적 협력계획들은 효율화·투명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강화되어야 하며, 따라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개선하는데 크게 공헌해야 한다. 각국은 국제연합 일반예산에서 나오는 할당분 중태를 장려함으로써 또한 자발적인 기부금을 통하여 이들계획에 대한 출연금을 늘려

야 한다.

22절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연합 활동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국제연합현장이 인권에 부여한 고도의 중요성과 회원국들로부터 위임 받은 국제연합 인권활동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국제연합 인권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23절

세계인권대회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하여 국내 기구들이 수행하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 특히 주무관청에 대한 조언능력,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인권에 대한 정보의 보급 및 인권교육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재확인한다. 세계인권대회는 “국내 기구들의 지위에 관한 원칙들”을 고려하고 국내 차원에서 각국 특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각 국가의 권리임을 인정하면서, 국내 기구들의 수립과 강화를 장려한다.

24절

지역기구들은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은 국제인권법규들에 포함되어 있는 보편적인 인권의 기준 및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세계인권대회는 대회 진행중 이러한 기구들을 강화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시에 국제연합 인권활동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이미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기구 및 소지역기구들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자 언급한다.

25절

세계인권대회는 모든 인권의 신장과 국내적·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의 인도주의적 활동에서 비정부 부문 조직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대회는 인권문제에 관한 대중의 인식 제고, 이 분야의 교육, 훈련 및 연구활동 그리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 및 보호에 대한 비정부 부문 조직들의 공로에 감사한다. 기준설정의 일차적 책임은 각 국가에 있음을 인정하지만, 대회는 이

과정에 대한 비정부 부문 조직들의 기여에도 역시 감사한다. 이 점에서 대회는 각국 정부와 비정부 부문 조직들 사이의 계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권 분야에 중심으로 관계해온 비정부 부문 조직들과 그 회원들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한 권리와 자유들을 향유해야 하며 국내법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비정부 부문 조직들은 국내법과 세계인권선언의 틀 내에서 간섭 없이 그들의 인권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6절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에 관한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공평무사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대회는 매체의 관여가 증대될 것을 장려하며 매체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틀 내에서 자유와 보호가 보증되어야 한다.

원래 문건 PC/98의 “1과 2 사이의 삽입절”에 포함되어 있는 절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향한 국제연합체제의 노력은 국가들간의 평화롭게 우호적인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안정과 복지에 기여하며, 국제연합현장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위한 개선된 조건들에도 기여한다.

제3부

I. 국제연합체제 내의 인권에 관한 조정의 증대

1. 세계대회는 국제연합체제 내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뒷받침할 조정을 증대시킬 것을 고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세계대회는 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는 모든 국제연합기구들과 조직체들 및 전문부서들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활동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대회는 또한 관계된 국제연합 조직체들과 전문부서의 고위공직자들이 연례회의에서 그 활동을 조정하는 외에도 그 전략과 정책들이 모든 인권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사무총장에 권고한다.

2. 나아가 세계대회는 지역조직과 저명한 국제적 및 지역적 금융 및 개발 기구들에게 역시 그 정책과 계획이 인권의 향유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2의 2. 세계대회는 국제연합체제의 관련 전문부서와 조직체 및 기구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여타 관계 정부간 조직들도 그 각각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인권기준들을 정식화하고 촉진하며 수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과 그 관장분야에서 세계대회의 결과를 고려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3. 세계대회는 국제연합체제 내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것을 목표로 채택되었던 국제인권조약과 의정서들의 비준, 가맹 혹은 승계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일치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사무총장은 조약기구들과 상담을 할 때 장애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이러한 인권조약에 가맹하지 않은 국가들과 대화창구를 열어놓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

3의 2. 세계대회는 각국이 국제인권법규에 대해 각각 설정하고 있는 모든 유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어떠한 유보이든지 유보는 가능한 한 엄격하고 좁게 설정할 것이며, 관련조약의 목표 및 목적과 모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고, 어떤 유보이든지 이를 철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해볼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한다.

4. 세계대회는 수준 높은 기준 국제기준들과 조화를 유지하고 인권법규들의 무분별한 증식을 회피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국제연합총회 결의 41/120에 포함된 새로운 국제법규들의 정교화와 관련된 지침들을 재확인하며, 국제연합 인권조직체들은 새로운 국제기준들의 정교화를 고려할 때는 새로운 기준들을 기초할 필요성에 관하여 인권조약기구와 상담할 것, 그리고 제안된 새로운 법 규들에 대해 사무국이 기술적 심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5. 세계대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회원국의 요구로 정보를 보급하고 인권분야에서 훈련과 기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조직 지역사무소에 인권담당관을 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인권과 관련된 작업에 배치된 국제 관리를 위한 인권훈련이 조직되어야 한다.

6. 세계대회는 인권위원회의 비상회의 소집을 적극적인 발의로서 환영하며, 국제연합체제의 관련기구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여타의 방법들을 고려하는 것을 환영한다.

자원

1. 세계대회는 인권센타의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및 기타 자원들 사이의 점증하는 불균형에 우려를 표하고 다른 중요한 국제연합체제들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유념하면서, 사무총장과 총회는 국제연합의 기존 및 장래의 일반예산 가운데에서 인권계획을 위한 자원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증대된 특별예산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러한 틀 내에서 일반예산의 증대된 부분이 직접 인권센터에 배분되어 그 비용과 국제연합 인권조직체들과 관련된 비용, 기타 인권센터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센터의 기술적 협력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재정지원은 이러한 증가된 예산을 강화해야 하고, 대회는 기존의 신탁 기금에 대한 아낌없는 출연을 촉구한다.

3. 세계대회는 사무총장과 총회에 대해 인권센터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 재정적 및 기타 자원을 충분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4. 세계대회는 정부간 조직들이 위임한 인권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재정적 자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보증할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국제연합헌장 제101조에 따라서 사무총장 그리고 회원국들이 증가한 임무에 소요되는 자원이 사무국에 할당되도록 보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관된 접근방법을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대회는 회원국들이 위임한 인권활동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이 계획예산 주기에서 절차조정이 필요하고 또 유용한지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

인권센터

1. 세계대회는 국제연합인권센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인권센터는 인권에 대한 범조직적인 관심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센터의 핵심적 역할은 다른 국제연합조직체 및 기구들과 완전히 협력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 세계대회는 국제연합에 의한 평화유지 활동과 관련한 특별기구에서 인권요소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여, 사무총장이 국제연합헌장에 따라서 인권센터와 인권장치들의 보고,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인권센터의 조정역할은 뉴욕의 인권센터사무소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3. 인권센터는 주제 및 국가별 보고담당자, 전문가, 실무단과 조약기구의 체계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보장받아야 한다. 권고에 이어지는 후속부분은 인권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우선적 사안이 되어야 한다.

4. 인권센터는 인권의 신장에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역할은 회원국간의 협력과 자문제공 및 기술지원에 대한 강화된 계획에 의하여 구체화 될 수 있다. 기존의 자발적 기금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활동은 엄격하고 투명한 기획운영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계획 및 기획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그러한 평가 행사의 결과와 기타 관련 정보가 통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센터는 특히 적어도 1년에 1 번씩은 이러한 기획 및 계획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원국 및 조직들에게 문호가 개방된 정보회합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제연합 고등인권판무관 창설문제를 포함한 국제연합인권기구의 개작과 강화

1. 세계대회는 이 선언에 반영된, 모든 국민을 위한 균형있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틀 내에서 인권의 신장 및 보호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요구에 국제연합인권기구들을 계속적으로 적응시킬 필요성을 인정한다. 특히 국제연합 인권기구들은 조정,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개선해야 한다.

2. 세계인권대회는 총회가 제48차 회의에서 대회보고서를 검토할 때 모든 인권의 신장 및 보호를 위한 고등인권판무관 창설문제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 사안으로 하여 개회하기를 권고한다.

II. 평등, 존엄 그리고 관용

A.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기타 형태의 불관용

1. 세계대회는 인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 특히 인종차별정책과 같이 제도적 형태로 나타나거나 인종적 우월성이나 배타주의 원리에서 나오는 인종차별주의와 인종차별, 혹은 현존하는 인종차별의 형태와 발로의 제거를,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와 범세계적 신장계획들이 추구해야 할 일차적인 목표로 간주한다. 국제연합기구들과 부서들은 인종차별주의 및 인종차별과의 싸움을 위한 10년 계획 3기뿐만 아니라 동일한 목표의 하위명령들과 관련된 행동계획을 수

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대회는 국제사회가 인종차별주의 및 인종차별과의 싸움을 위한 10년계획을 위한 신탁기금에 아낌없이 출연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2. 세계대회는 각국 정부에게 모든 형태와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혹은 관련된 불관용을 방지하고 이와 투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별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법률 제정에 의해, 그러한 현상과 싸우기 위한 국내기구의 창설에 의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정책을 개발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3. 세계대회는 인권위원회가 현재 여러 형태의 인종차별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된 불관용에 대한 특별보고 담당자를 임명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세계대회는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정의 모든 체약당사국들이 협정 제14조에 규정된 선언을 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호소한다.

4. 세계대회는 모든 개인의 사상·양심·표현 및 종교의 자유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여, 각국 정부가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 종교유적의 모독을 포함하여 종교 혹은 신념에 근거한 불관용과 이와 관련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한 각각의 법체계에 대한 적절한 고려에 따라, 그 국제적 의무에 합치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회는 각국이 종교와 신념에 근거를 둔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의 규정들을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5. 세계대회는 인종청소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관장하는자는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며, 국제사회는 그러한 침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6. 세계대회는 각국이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인종청소 관행과 투쟁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종청소 관행에 조속히 종지부를 찍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인종청소 관행의 희생자들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B. 민족적·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1. 세계대회는 인권위원회가 민족적·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에 규정된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

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대회는 인권센터가 관계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자문제공과 기술지원이라는 그 계획의 일부로서, 기존의 혹은 잠재적인 상황에서 관련된 소수집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의 예방 및 해결뿐만 아니라 소수집단 문제와 인권에 관한 유자격 전문가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 세계대회는 각국과 국제사회가 민족적·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국제연합선언에 따라서 민족적·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3. 적절한 경우라면 취해야 할 조치들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종교적·문화적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과 그 나라의 경제적 진보 및 개발에 대한 소수집단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B의 2. 원주민

1. 세계대회는 소수집단의 차별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원주민 문제 실무단이 제11차 회기에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초안을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2. 세계대회는 인권위원회가 원주민에 관한 선언의 초안을 완성함과 동시에 원주민문제 실무단에 대한 위임의 개신과 연장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3. 또한 세계대회는 국제연합체제 내에서 자문제공과 기술지원 계획이 원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지원을 구하는 국가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세계대회는 이 문건에서 예견된 센터의 활동을 강화한다는 전체적인 틀 내에서 인권센터가 적절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4. 세계대회는 원주민들이 사회의 모든 측면들 특히 그들과 관련된 문제에 완전하고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증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

5. 세계대회는 총회가 1994년 1월을 기점으로, 원주민과 공동으로 결정될 행동지향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세계원주민의 국제 10개년 계획을 선포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자발적 신탁기금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 10개년 계획의 틀 내에서, 국제연합체제 내에 원주민을 위한 상설적 포럼의 창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B의 3. 이주노동자

세계대회는 각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보호를 보증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대회는 이주노동자와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사회의 여타 부분 사이에 보다 큰 조화와 관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의 창출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대회는 국가들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정에 조인, 비준할 수 있는지 고려해볼 것을 요청한다.

C.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

1. 세계대회는 여성들이 모든 인권을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이 각국 정부와 국제연합의 우선과제임을 촉구한다. 또한 세계대회는 개발과정에서 그 수행자인 동시에 수혜자인 여성의 통합과 완전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리우선언 의제 21의 제24장에서 개진된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발전을 향한 여성을 위한 전세계적 행동에 관하여 확립된 목표들을 재차 언급한다.

2.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여성의 인권은 국제연합의 범체계적인 활동의 본류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 사안들은 관계된 국제연합기구 및 기관에 의하여 일반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지위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위원회(CEDAW), 국제연합여성개발기금(UNIFEM),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기타 국제연합부서들 사이에 협력을 증대시키고 그 목표와 목적을 더욱 통합시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센터와 여성지위 향상분과 사이의 협력과 조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3. 특히 세계대회는 공적·사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회통, 착취 및 인신매매를 제거하며, 사법운영에서 성별에 근거를 둔 편견을 제거하고, 여성의 권리와 일정한 전통적 혹은 관습적 관행, 문화적 편견과 종교적 극단성의 해악적 효과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계대회는 총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각국이 그 규정들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투쟁할 것을 촉구한다. 무력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는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의 근본원칙에 대한 침해이다. 특히 살인,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제도와 강제임신을 포함한 이러

한 종류의 모든 침해는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책을 요구한다.

4. 세계대회는 은폐된 것이든 공공연한 것이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근절을 촉구한다. 국제연합은 각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정을 서기 2000년까지 보편적으로 비준한다는 목표를 장려한다. 협정에 대한 특히 많은 수의 유보들을 겨냥한 방법과 수단들이 장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를 위한 위원회(CEDAW)는 협정 유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각국은 협정의 목표와 목적에 반하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국제조약법과 모순되는 유보들을 철회해야 한다.

5. 조약감시기구들은 여성들이 인권과 무차별의 완전하고 평등한 향유를 추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실행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의 평등과 여성의 인권에 대한 기여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들도 채택되어야 한다. 여성지위위원회(CSW)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를 위한 위원회(CEDAW)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정에 대한 선택의정서 준비를 통한 청원권의 도입가능성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세계대회는 인권위원회가 제50차 회기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 담당자의 임명을 고려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6. 세계대회는 여성들이 그 일생 동안 최고수준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1968년의 테헤란선언뿐만 아니라 세계여성 대회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정의 맥락 속에서, 세계대회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라는 기초 위에서 모든 수준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뿐만 아니라 손쉽고 적절한 보건 및 아주 광범위한 가족계획 서비스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재확인한다.

7. 조약감시기구들은 특정 성별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그 심의와 조사결과들 속에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인권을 포함시켜야 한다. 조약감시기구들에 대한 각국의 보고서에서 여성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지위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세계대회는 인권위원회가 제49차 회기에 인권분야의 보고담당자와 실무단 역시 그렇게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결의(결의 1993/46)를 채택한 것을 만족스럽게 새겨두고 있다. 또한 여성지위 향상분과도 다른 국제연합조직체들 특히 국제연합인권센터와 협력하여, 국제연합의 인권 활동이 일반적으로 특정 성별과 관련된 폐습을 포함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겨냥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국제연합 인권 및 인

도주의적 구제인단이 여성에 특유한 인권폐습을 인식하고 취급하며 성별에 근거한 편견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이 장려되어야 한다.

8. 세계대회는 정부와 지역조직 및 국제조직은 결정권을 행사하는 직위를 향한 여성의 접근과 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많은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대회는 국제연합 사무국이 국제연합현장에 따라 여성간부회원을 임명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한 것을 장려하며, 국제연합의 다른 주요 기구 및 부속기관들이 평등한 조건하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증하는 것을 장려한다.

9. 세계대회는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될 세계여성대회를 환영하며, 평등·개발과 평화라는 대회의 주요 주제들에 따라서 여성의 인권이 그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촉구한다.

D. 아동의 권리

1. 세계대회는 “아동을 위한 최초의 요구” 원칙들을 재차 언급하며, 이 점에서 주요한 국내적·국제적 노력을 특히 생존·보호·개발 및 참여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노력을 강조한다.

2. 1995년까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의 보편적 비준, 세계정상선언 및 행동계획의 보편적 조인 및 그것의 효과적 수행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세계대회는 각국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설정하고 있는, 그 목표 및 목적에 반하거나 그렇지 않다 해도 국제조약법에 반하는 유보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3. 세계대회는 모든 민족이 국제적 협력의 뒷받침을 받아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계정상행동계획에서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대회는 각국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을 국내 행동계획 속에 통합시키기를 요청한다. 이러한 국내 행동계획과 국제적 노력을 통하여 유아사망률 및 산모사망률을 낮추고 영양실조와 문맹률을 낮추며 안전한 음용수와 기본적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특별히 우선점이 두어져야 한다. 자연재해와 무력분쟁으로부터 생겨나는 황폐한 비상사태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각한 극빈 속의 아동문제와 싸우기 위한 국내 행동계획들이 그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고안되어야 한다.

4. 세계대회는 각국이 국제적 협력의 뒷받침을 받아 특히 어려운 상황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착수하길 촉구한다. 아동착취 및 학대의 근본원인을 논의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와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 여유아 살해, 유해 아동노동, 아동인신매매 및 장기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 그밖의 형태의 성적 학대에 맞선 효과적인 조치들이 요구된다.

5. 세계대회는 국제연합과 그 전문위원회가 여아인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신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들을 지지한다. 세계대회는 각국이 여아를 차별하고 그에 대한 해악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과 법령, 관습과 관행을 철폐하고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6. 세계대회는 사무총장이 무력분쟁에서 아동의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연구를 발의한다는 제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전쟁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인도적인 규범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에는 모든 전쟁무기, 특히 대인지뢰의 무차별적 사용으로부터의 아동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쟁으로 충격을 받은 아동의 사후조리와 사회복귀의 필요성이 긴급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대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군대 최소 징집연령을 올리는 문제를 연구할 것을 촉구한다.

7. 세계대회는 관계된 모든 국제연합체제 기구들과 장치들 그리고 그들의 위임에 따른 전문부서 감독기구들이 아동의 인권과 상황에 관련된 사안들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8. 세계대회는 모든 인권법규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의 효과적인 수행에서 비정부 부문 조직들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9. 세계대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인권센터의 보조를 받아서 특히 유례없는 정도의 비준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각국 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고려하여, 그 임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기를 권고한다.

E.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세계대회는 많은 회원국들이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처우나 형벌 반대협정을 비준할 것을 환영하며, 다른 회원국들도 모두 조속히 협정을 비준할 것을 장려한다. 세계대회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장 극악한 침해의 하나가 고문행위이며, 그 결과 존엄성이 파괴되고 피해자는 그 생활과 활동을 계속해나갈 능력을 손상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세계대회는 인

권법과 인도주의법에 따르면 고문으로부터의 자유는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소요나 무력분쟁시기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재확인한다.

그러므로 세계대회는 각국이 고문관행에 즉각 종지부를 찍고 세계인권선언 및 관련 협정들을 완전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악을 영원히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대회는 특별보고 담당자가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각국이 완전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연합총회가 채택한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불명예스러운 처우나 형벌로부터 수형자 또는 미결수를 보호하는 데 보건담당자 특히 의사가 하는 역할과 관련된 의료윤리의 원칙들”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그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세계대회는 고문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육체적·심리적 및 사회적 재활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구제책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틀 내에서 취해지는 보다 구체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의 공급, 무엇보다도 고문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에 대한 추가적 출연에 의한 자원공급에 우선점이 두어져야 한다.

국가는 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들을 면책해주는 입법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를 소추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법의 지배에 굳건한 초석을 제공해야 한다.

세계대회는 고문을 근절하려는 노력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방에 집중되어야 함을 재확인하며, 따라서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이라는 예방체계를 확립할 의도로 마련된, 협정의 선택의정서를 조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강제실종

세계대회는 모든 사람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관한 선언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각국이 강제실종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종지부를 찍으며 처벌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행정·사법적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대회는 강제실종이 각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영토에서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언제나 이를 조사하고, 그 주장이 확인되면 그 범행자를 소추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각국의 의무임을 재확인한다.

F. 장애인의 권리

1. 세계대회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며 따라서 따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가 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적 처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세계대회는 각국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이들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장애인은 어디에나 있다. 장애인들은 육체적이건, 재정적이건, 사회적이건 혹은 심리적인 것이든, 사회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모든 장애물의 제거를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3. 총회가 제37차 회기에 채택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을 상기하면서 세계대회는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장애인을 위한 기회의 평등화에 관한 표준규칙의 초안을 1993년 회합에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III. 협력, 개발과 인권 강화

1. 세계대회는 민주주의, 개발과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적 및 국제적 행동에 우선점이 두어야 함을 권고한다.

2. 인권과 관련된 제도의 강화와 건설,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와의 강화와 취약집단의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각국 정부의 요구로, 선거의 인권적 측면과 선거에 관한 공공정보의 지원을 포함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은 특히 중요하다. 법 지배의 강화, 표현의 자유 및 사법운영의 촉진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인민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지원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3. 세계대회는 인권센터에 의한 강화된 자문제공 및 기술지원 활동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다. 센터는 각국의 요구가 있으면, 각국이 인권조약에 따른 보고서 준비뿐만 아니라 인권 신장 및 보호를 위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행동계획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준비를 포함한 특정 인권문제에 관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 및 민주적 제도의 강화, 인권의 법적 보호, 관련 종사자들의 훈련, 인권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폭넓은 교육과 공공정보는 이들 계획의 구성요소로서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세계대회는 인권의 전면적 준수와 법 지배의 유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적절한 국내제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과제를 지고 있는 국가들을 돋기 위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계획이 국제연합 내에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권고한다. 그러한 계획은 인권센터에 의하여 조정되어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형사교정설비의 개혁, 변호사, 판사 및 인권관계 안전요원의 교육 및 훈련 그리고 법 지배의 원활한 기능과 관련된 기타 모든 활동에 대한 국내기획에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계획은 각국이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세계대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안강령의 확립, 구조, 작동양식 및 재원조달을 위한 대안이 포함된 의안을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6. 세계대회는 각국에 대하여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확인하는 국내 행동계획을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고려해줄 것을 권고한다.

7. 세계인권대회는 개발권에 관한 선언에서 화립된 보편적인 불가양의 개발권이 이행되고 실현되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대회는 인권위원회가 개발권에 관한 주제별 실무단을 임명한 것을 환영하고, 그 실무단은 국제연합체제의 다른 기구나 부서들과 상담하고 협력하여 개발권에 관한 선언의 이행 및 실현에 대한, 그리고 각국의 개발권 실현을 위한 방법과 수단 권고에 대한 장애를 제거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신속히 정식화하여 이를 국제연합총회가 빠른 시일 안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8. 세계대회는 개발 그리고(혹은) 인권에 적극적인 비정부 부문 조직 기타 풀뿌리조직들이 개발권과 관련된 논의·활동 및 그 이행에서 그리고 개발협력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각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서,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권고한다.

9. 세계대회는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기능하는 법체계를 건설하는 것과 이러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국내제도에 충당되는 자원을 크게 증대시킬 것을 각국 정부, 주무관청 및 기구들에 호소한다.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행위자

들은 개발, 민주주의 및 인권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강화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세계대회는 법 지배 및 민주적 제도의 강화와 관련된 전문가를 갖춘 정보 및 인력자원 은행을 포함한 포괄적 계획의 수립을 요구한다.

10. 세계대회는 인권위원회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와 협력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정에 대한 선택의 정서의 검토를 계속할 것을 장려한다.

11. 세계대회는 인권센터의 자문제공 및 기술지원 계획하에서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지역기구들을 강화하거나 수립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자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각국은 국제인권법규들에 규정된 보편적 인권기준들에 따라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지역기구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된 지역 및 소지역 워크샵, 세미나 및 정보교환 등의 목적을 위하여 지원을 요구할 것을 장려한다.

12. 세계대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정과 기타 관련 법규들에 규정된 노동조합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신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과 그 관련 전문부서들이 취한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 세계대회는 각국에게 이 점에 관하여 국제법규들에 규정된 그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IV. 인권교육

1. 세계대회는 인권교육, 훈련 및 공공정보가 공동체들 사이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관계의 신장 및 성취, 상호 이해와 관용 및 평화의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2. 각 국가는 문맹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교육 방향을 인간개성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에 맞추어야 한다.

3. 국제인권법규 및 지역인권법규들에 규정된 것처럼,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여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한 공통된 이해와 자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민주주의·개발 및 사회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4. 세계인권대회는 1993년 3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국제의회가 채택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행동계획과 기타 인권

법규들을 고려하여, 각국이 매우 광범위한 인권교육과 공공정보 보급을 보장하고 특히 여성의 인권요구를 고려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과 전략을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5. 각국 정부는 정부간 조직, 국내제도 및 비정부 부문 조직들의 지원을 받아 인권과 상호 관용에 대한 자각이 증대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세계대회는 국제연합이 수행하는 세계공공정보캠페인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국 정부는 인권교육을 주도하고 지지해야 하며, 이 분야에서 공공정보의 효과적인 보급을 떠맡아야 한다. 국제연합체제의 자문제공 및 기술지원계획은 인권 분야의 교육 및 훈련활동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규들과 인도주의법에 규정된 기준들과 이를 기준을 균대, 법집행담당관, 경찰 및 보건직 등의 특수집단에게 적용하는 데 관한 특별교육에 대한 각국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며 이에 집중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인권교육 10년의 선언이 고려되어야 한다.

V. 이행 및 감시 방법

1. 세계대회는 각국 정부가 국제인권법규들에 규정된 기준들을 국내 입법에 구체화시키고 인권의 신장 및 보장에서 역할을 담당할 국내적 사회구조, 제도 및 기관들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세계대회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자국의 국내기구를 수립하거나 강화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의 지원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활동 및 계획의 강화를 권고한다. 세계대회는 또한 지역적 조직이나 국제연합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내기구들 사이의 협력을, 특히 정보와 경험의 교환을 통하여 강화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세계대회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내기구의 대표자들이, 인권센터의 후원을 받아 그 운용을 개선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회합을 소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3. 세계대회는 인권조약기구, 조약기구 의장회의 및 당사국회의에 대하여, 국가별 보고서 준비를 하는 데 대한 각 인권협정 소정의 중복되는 보고요구들 및 지침들을 조정하기 위한 계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각국이 지는 조약상의 의무에 관한 하나의 전체적 보고서의 제출이 이러한 절차들을 보다 효

과적으로 만들고 그 영향을 증대시킬 것인지를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

4. 세계대회는 국제인권법규들의 당사국, 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가 다양한 기구들, 장치 및 절차들의 명령과 임무가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중첩되는 것을 회피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인권조약기구와 다양한 주제별 장치 및 절차들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이들을 보다 잘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5. 세계대회는 이 점에 관하여 이루어진 수많은 제안들 특히 조약기구 자체와 조약기구 의장단이 내놓은 제안들을 고려하여, 감시임무를 포함한 조약기구의 작동 개선에 관하여 계속 작업할 것을 권고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취한 포괄적인 국내적 접근법 또한 장려되어야 한다.

6. 세계대회는 인권조약의 당사국들이 이용가능한 모든 선택적 의사소통 절차를 받아들이도록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6의 2. 세계대회는 인권침해법의 면책문제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문제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기 위한 인권위원회와 차별 방지 및 소수집단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노력들을 지지한다.

7. 세계대회는 인권위원회가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 기존 인권법규들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볼 것을 권고한다.

8. 세계대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1949년 제네바협정과 그 의정서를 승인하고 그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한다.

9. 세계대회는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 및 보호를 위한 사회의 개인, 집단 및 기관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 초안의 조속한 완성과 채택을 권고한다.

10. 세계대회는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보고 담당자, 대표자, 전문가 및 실무단과 차별 방지 및 소수집단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체계를 유지·강화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전세계 각국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절차와 장치들은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그들의 작업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각국에게 이러한 절차들 및 장치들과 완전히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11. 세계대회는 국제연합이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무력분쟁의 모든 상황에서 국제인도주의 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증함으로써 인권

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을 것을 권고한다.

1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들에 관한 국제협정에 규정된 권리들의 실현에서 진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체계와 같은 추가적 접근법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승인을 국내적·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보증하기 위한 일치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

VI. 세계대회 후속조치

1. 세계인권대회는 총회, 인권위원회 기타 인권과 관련된 국제연합체제 내의 기구관들 및 부서들이 국제연합 인권 10개년의 선포를 포함하여 이 대회의 최종문건에 포함된 권고들을 지체없이 완전히 이행할 방법과 수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세계대회는 나아가 인권위원회가 매년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을 심사할 것을 권고한다.

2. 세계대회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행사에서 각국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연합체제의 모든 기구들과 부서들이 이 대회 최종문건의 이행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관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 제53차 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할 것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권고한다. 마찬가지로 비정부 부문 조직들뿐만 아니라 지역인권기구와 적절한 범위 내에서는 국내 인권기구들도 이 대회 최종문건의 이행에서 이루어진 진전에 관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체제의 틀 내에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과 의정서의 보편적 비준이라는 목표를 향한 진전을 평가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자료

이에나가 교과서 검정소송사건 의견서

평성원년 제3428호 손해배상청구 항소사건

지명관

1. 들어가는 말

나는 1924년에 태어났다. 일본지배하의 식민지 조선에서 소학교, 중학교 그리고 소학교교원이 되기 위한 사범대학교의 실습교육(實習教育)을 받았고, 1945년 4월에 당시 소학교, 즉 국민학교 교사가 되었다. 전후에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수업하였고, 대학에서 가르쳤다. 1972년 10월에 일본으로 와서 동경대학교 대학원에서 잠시 일본정치사상사를 공부한 후, 동경여자대학 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지금은 주로 아시아 및 한국의 문화, 사상에 관한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통치하의 조선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전전(戰前)의 일본에 대하여 여려가지 혹독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 1학년 생일 때 중일전쟁이 일어났다. 그 다음해인 1938년에는 중학교에서 조선어과목이 폐지되었다. 그와 함께 '국어 상용(國語常用)'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문득 뒤 어나오는 조선어 때문에 처벌받기도 하고, 신사참배(神社參拜), 동방요배, 어진 영배례 등을 강요받아서, 어린 마음에도 양심적 고통을 맛보았다. 이러한 일상적 경험 중 때로는 일본인 교사가 대부분이던 학교당국과 몇 번이고 충돌했다.

이러한 과거 때문에 지금도 군국주의적 지배, 독재적 지배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양심을 짓밟는 외압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본은 전후에 생취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양심의 자유를 확인하고, 이를 발전시켜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그러한 시민적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한 의미에서의 일본에 대한 기대는 더 한층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일본을 위하고, 아시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일본과 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때문에 발생한 정치적·문화적 마찰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가능한 한 빨리 해소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이로써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안정과 번영이 있기를 마음깊이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의 경제력이 발전하는 만큼, 거꾸로 역사교과서에서는 후퇴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를 아시아인들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와 같이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교과서 재판의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하는 것이다. 단지 보다 나은 한일관계의 진전을 원할 뿐이다.

2. 1982년의 교과서검정과 한국의 반응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문제는 한일 양국관계에서 지금도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1982년의 교과서검정 결과가 한국에 알려진 후, 7월에서 8월에 걸친 약 1개월 반 동안 한국에서 보였던 높은 반일의 기운은 다분히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례를 들어보자. 한국의 유수한 신문『동아일보』 7월 29일자 지면을 보면, "일본, 다른 나라 교과서까지 왜곡작업", "외무부, 교과서시정 적극 촉구" 등 일본 교과서문제에 관한 기사가 1면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일면의 사설제목은 "일본의 각성을 재촉구한다—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경제협력도 백지화시켜야 한다"였고, "일본 교과서 왜곡, 아시아 여러 나라, 강하게 분노" 등의 기사가 그 지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3면에서는 "우리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는 노역사가의 글 및 "한층 더한 한국멸시" 등의 기사가 그 지면을 거의 다 메우고 있다. 또 그다음 면에서는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부분"이라고 7개 항목을 들고 이에 관한 전문가의 비판을 실음으로써 그 전 지면을 채우고 있다.

이런 기사는 연일 “마각을 드러낸 일본” 등의 칼럼에서 “그 만행… 그 진상… 내가 경험한 ‘일제침략’을 증언한다”, “일본역사의 시계… ‘교과서왜곡’을 계기로 본 현지의 눈”, “현대사의 재조명… ‘일본 교과서파문’ 침략과 저항의 실상” 등의 기획기사로 10여 회씩 계속되었다. 8월 5일자 신문에서 한국의 문교부 산하 역사편찬위원회 명의로 2면에 걸쳐 “일본 교과서 왜곡, 한국관계 내용”이 발표되고 있다. 그것은 “일본교과서의 내용”에다 한국측의 “내용검토”를 덧붙인 것이다. 이들 내용에 대하여 여기서 일일이 예를 들 수는 없다. 일본의 ‘독선적 우월감’, 일본의 위정자들은 “한일양국간의 우호관계”를 말하지만, 그것은 “전부 거짓이라고 이해해도 어쩔 수 없다”(『동아일보』 7월 20일자)는 것 등이다. 다만 그 일단을 보이기 위하여 여기서 몇몇 신문을 조금 인용해본다.

만일 역사교육에서 침략주의의 미화 혹은 합리화의 경향이, 자민당정권의 군비강화 및 헌법개정의 기도와 그 궤를 같이하고, 역사교육 변경의 목적이 한번 더 호전적인 국민을 만드는 데에 있다고 전망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중앙일보』 7월 23일자)

이러한 일본의 자세에 대하여는 ‘남북을 초월한 민족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어떤 지식인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그같은 교과서의 우경화를 지지하는 세론이 주로 한국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지한파’ 및 ‘친한파’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조선일보』 8월 10일자)고 썼다.

바로 일본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소리가 있다. “이 절실한 바람은 내정간섭이 아니다. 세계사의 진전에 대하여, 서로 신뢰하고 기꺼이 협력할 수 있는 이웃, 동반자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권고이자, 충고이다”(『경향신문』 7월 26일자)라고 응수하였다.

그리고 원래 같은 “일본에 의한 모욕을 자초하여왔다는 것”을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정치가들은, 우리 정부의 과거 무분별한 저자세가, 그들 일본인으로 하여금 무례한 사태를 일으키도록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에 여러가지 대일접촉에서 ‘저자세’ 혹은 ‘굴욕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동아일

보』 7월 31일자 사설) 또 어떤 지식인은 “개인적으로는 대일 선전포고라도 하고 끈 심정이다”(『동아일보』 8월 14일자)고 읊조리고 있다.

“교과서 검정 때문에 옛 상처가 도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미소와 사죄에 숨어있는 원래의 소리는 아닌가, 또 그것이 일본국민의 마음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정한 소리는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심정을 거스르는 일이 다. 그래서 “반일에서 극일로” 등이 외쳐지고, 독립기념관 건립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국민현금 683억 원, 정부보조금 63억 원, 합계 746억 원으로 5년후 독립기념관이 세워지게 되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하여 과잉반응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일본과 한국 또는 아시아의 관계 밀바닥에 가로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시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한국의 속담으로 말하면, “백년 공든 탑, 하루에 무너진다”는 것이다. 가까스로 쌓아올린 우호관계가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일이 이에나가 선생의 『신일본사』에서 청일전쟁에 관한 기술 가운데 “전쟁터가 된 조선에서 인민의 반일저항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검정처분”에 의해서 “전쟁터가 된 조선에서는 노력, 물자의 조달 등에서 인민의 협력을 얻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로 수정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면 도대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설마 이런 결과가 정말로 교과서검정에서 의도하였던 것일까. 그것은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이상의 인용문에 대하여는 다카사키 쇼오지, “한국지식인이 본 일본교과서 문제”, 『제간 삼천당』 1982년 겨울호 참조)

1982년에 한국측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전부 왜곡”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거론한 것은 “왜곡된 7항목”이라는 것이었다. 제1항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진출이 본격화했다 또는 내정권을 접수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제2항은 조선의 주권을 탈취했으면서도 황제에 암위를 촉구하고 군대가 그 저항을 진압했다고 쓰고 있는 것, 제3항은 애국지사의 탄압을 조선인의 권리, 자유를 제한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제4항은 토지의 약탈을 토지조사를 한 후 관유지로 접수했다고 하는 것, 제5항은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데모, 폭동이 조선에 과급됐다고 쓰고 있는 것, 제6항은 국어의 사용을 금지한 것을 조선어, 일본어가 공용어로 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 제7항은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장려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측은 “일본 문부성에서 왜곡 적극 주도”(『동아일보』 7월 28일자)했

다고 주장하고, 일본측에 그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측에서는 교과서 비판은 “내정간섭”이라는 소리(예; 松野辛泰 國토청장관의 발언 및 小川平二 文相의 “검정변경하지 않는다”는 발언) 등이 대두하였고, 이로써 한국측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8월 3일 일본측에 “비방록”을 보내 “한국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일본정부의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을 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8월 26일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의 담화 형식으로 “교과서를 85년부터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한국의 세론은 “그때부터의 검정에 ‘반성’의 반영은 미지수”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면서도, 장래의 진행에 주목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3. 한국에서 일어난 반발의 배경

1982년 일본의 교과서검정에 대하여 한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보였던 배경에는 물론 근대 한일관계에 불행한 역사가 염연히 있는 데다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 물론 있다. 이 반발과 항의의 기간동안 각 신문이 앞을 다투듯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실었다는 것에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1876년 일본의 강요에 의하여 한일수호조약이라는 불평등조약이 체결된 이래, 조선근대사의 중심은 한일관계와 일본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에 있었다. 그것에 대하여 여기에 상세히 기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일본에서 출판된 어떤 조선근대사에서도 명확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일례로 여기에서 1905년에 강요된 한일보호조약에 저항했던 의병에 대한 일본군의 토벌에 대하여 써보자. 그것은 1909년의 소위 ‘남한대토벌작전’이라고 하는 군사행동이었다. 근대적 장비의 일본군에 쫓겨 도망칠 곳을 잊었던 의병에 대하여 당시의 유학자 황현은 동시대사인 『매천아록』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방에 그물을 쳐놓은 듯이 마을과 집안을 살살이 뒤져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곧바로 죽였다. 그래서 길 가는 행인이 끊기고, 인근 마을을 통행할 수가 없었다. 의병은 삼삼오오 사방으로 도주하였지만 숨을 곳이 없었다. 강자는 앞으로 돌진하여 죽었고, 약자는 숨고 도망하다가 칼을 맞았다. 점점더 쫓겨서 강진, 해남(조선의 남단)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도망갈 땅이 없어서 죽은 자가 수천을 넘었다.

이같은 조선의 비극을 적은 황현은, 이 시대를 견디지 못하고 1910년 한일 합병이 알려지자 이러한 시대에 지식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절명시를 남기고 음독자결하였다. 일본 통치자측에서 보면, 의병은 ‘불령 선인’이고, ‘폭도’였고, 황현 같은 유학자는 ‘불평분자’였다. 그러나 그는 한 국인측에서 보면, 영원히 잊히지 않을 애국자이며, 지사이며, 의인인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사실은 다음 세대에도 계승될 위대한 민족사의 일부이다. 그 때문에 그것은 한국 근대사교육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 『국사』를 거론해보고 싶다. 지금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의한 고등학교용 『국사』는 상·하 합하여 500페이지 정도이다. 그 가운데 일본 통치하의 조선을 다루고 있는 것은 하권 제3장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는 장이다. 이 3장은 ‘독립의식의 성장과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전쟁’, ‘경제·사회적 저항운동’, ‘민족문화수호운동’의 4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이것이 1910년의 합병에서 1945년 해방까지의 역사이다. 그것이 42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1876년의 한일수호조약부터 1910년까지의 한일관계도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청일전쟁 및 동학농민혁명, 러일전쟁 및 조선에 대한 보호조약 등의 한일관계도 포함되는 셈이다. 이같은 근대의 역사 ‘개항과 근대사회의 개막’ 이후의 역사가 50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근대 이후 1945년까지의 한일관계의 불행한 역사, 그 침략의 역사가 92페이지로 거의 하권의 3분의 1 이상 즉, 한국 수천년의 역사에 관한 기술 500페이지 가운데 거의 5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불과 69년간의 역사에 대한 기술이다. 그 내용은 명치 이후의 일본을 흑독하게 문책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교육은 한국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본의 침략 또는 지배는 끝났어도, 한국민 사이에는 그 역사에 대한 엄밀한 의식이 계속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이 시대의 조선사 또는 한일관계사가 모두 없었다면, 또 그것이 사실에 반하게 왜곡되어 일본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한국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미화되고 있는 것이라면, 한일간의 그같은 의식의 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좋을 것인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많은 적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그같은 문제를 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 이에나가 선생의 『신일본사』에 대한 문부성 검정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 것인가. 그대로 방치해도 좋을 것인가.

4. 『신일본사』(家永三郎 著)에 대하여

나는 일본고교의 몇 가지 세계사 교과서와 일본사 교과서에 대하여 조선에 관련한 기술을 중심으로 조사 검토해보았다.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그 내용이 학자적 양심과 건전한 시민적 양식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하면서 부럽다고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세계사 교과서에서의 기술이 일본사의 그것에 비하여 조선 또는 아시아의 역사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포괄적이며, 체계적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사 교과서에는 문부성의 검정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만이 문제되었던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일본사와 아시아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역사관이 문제로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에나가 선생의 『신일본사』는 유난히 뛰어나며,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 아시아 또는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국제화를 표방하고, 동아시아의 문화권, 경제권을 말하는 요즈음에, 이 이에나가 교과서는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도 모델로 하여야만 할 교과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에나가 교과서에서는 고대사 서술에서도 아주 독특하다. “일본의 고대문화의 내부에는 북방의 시베리아, 만주방면의 문화와 연결된 요소도 있지만 남방의 동남아시아, 남양방면과 연결된 요소도 있다.”(7쪽) 그래서, 일본어는 여러가지 특징으로 보아 조선어, 알타이어계(만주, 몽골 등의 여러 언어)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일본인의 유래’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인골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7쪽)가 진전되어야만 한다고 앞으로의 과제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원전 4~3세기경 조선반도로부터 ‘수전도작’, ‘농경기술’, ‘금속기와 방직기술도 받아들여졌다’(13쪽)고 써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결정적인 역사적 사실이며, 오늘과 같이 국제화를 부르짖는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일본사 교과서에는 이러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뛰어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에나가 교과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끝도 없겠지만,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보겠다. 그것은 ‘원의 내습’(82~83쪽)에 대한 기술이

다. 이에나가 교과서는 원나라 왜구의 내습 경위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또 주석에서는 제법 상세하게 아시아의 원에 대한 저항에 대하여도 썼다. 또 ‘막부정치의 동요’(83쪽)라는 항목에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막부는 원나라 왜구를 통하여 어가인 이외의 무사를 통제하에 놓게 되었고 그 세력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그 전쟁을 위하여 막부의 재정은 곤란하게 되어, 막부로서는 새로운 은상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어가인의 불평을 샀다. … 자기영토를 잃은 어가인 가운데는 주변의 무사들과 결탁하여 장원 및 다른 어가인의 영토를 침범하는 자도 나타났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받아들여 기술하고 있는 입장으로 이에나가 사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평화사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릇 전쟁은 무엇을 가져다주는가. 승리하여도 거기에 취해서는 안된다. 그 점이 바로 오늘날 일본이 세계에 대하여 발표해야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래서 다음 세대의 일본인은 그같은 고귀한 정신을 몸에 익혀 일본과 세계에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나가 교과서에는 이같은 우국의 비원이 담겨 있다고 한다면 내 생각이 지나친 것일까.

이런 이에나가 교과서에서는, 1894년 청일전쟁에 대하여 “일본군의 승리가 잇따랐지만, 전쟁터가 된 조선에서 인민의 반일저항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기술하였는데, ‘검정의견’ 때문에 그 부분이 “일본군은 승리를 거듭하였지만 전쟁터가 된 조선에서는 노력, 물자 조달 등에서 인민의 협력을 얻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라고 수정되었다.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조선에서는 인민의 반일저항이 자주 일어났다”는 부분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가 명백하지 않다”는 검정측의 주장은 조선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신일본사』를 조사해보면, 1876년 일본이 조선과 한일수호조약 즉 ‘일한수호조규’를 체결한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의 반일저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만 이 한 군데뿐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던 바와 같이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 이 ‘일한수호조규’라는 불평등조약으로 시작하여 그 후 조선에서는 ‘반일저항’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다. 유학자들은 ‘왜양일체’라고 하여 일본인은 ‘양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해서 위 조규로 인한 대한 개항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의 무기

로 무장하고 일본인의 훈련을 받았던 소총부대 ‘왜별기’가 편성되었지만 드디어 1882년에는 군관, 군졸에 의한 군란이 일어났다. 이 임오군란 때 일본공사관은 습격되어 일본인 교관 등이 살해되었다. 그 결과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었고 일본측은 군대주둔권을 획득하였다. 이로부터 1884년의 갑신정변, 1894년의 동학농민봉기 등 조선인민의 반일저항이 계속되었다. 이에나가 선생은 청일전쟁에 관해 기술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은 오랜 동안 청나라의 신하국이었고 청도 또한 이를 속국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 진출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조선에 대한 청일양국의 폐권다툼이 벌어지는 와중에, 1882년(명치 15), 1884년(명치 17) 2회에 걸쳐 조선에서 사변이 발생하였다.

전자가 임오군란이고 후자는 갑신정변이지만 이들 사건에서 조선인민의 반일저항에 대하여는 건드리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청일양국이 빼걱거릴 뿐, 조선국민은 없는 것처럼 되었다. 실제 이에나가 교과서에서도 근대 이래의 한일관계에 관해서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다루어서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그 점에 대해 나는 비판할 것이 많다. 그래서 간신히 청일전쟁과 관련하여 “인민의 반일저항이 자주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동학에만 한정하여도 그것은 ‘제세안민’, ‘진멸권귀’라는 봉건적 지배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축멸왜이’를 내세웠던 반일저항이었던 것이다. 원래 동학은 반일적이었다. 그 개조 최제우가 1860년에 썼다고 알려져 있는 〈안심가〉에는 이미 “개 같은 왜적을 신의 조화로 하룻밤 사이에 소멸시키자”라는 시가 씌어 있다. 이것은 도요토미 허데요시(豊臣秀吉) 군대의 조선침략, 목록경장(文祿慶長)의 역(役) 즉, 조선측에서 말하는 임진왜란의 참극이 농민의 전승 가운데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1860년이라고 하면 근대 한일관계가 시작된 1876년으로부터 16년 전이다. 그래서 동학은 청일전쟁 때문에 조선에 출병하였던 일본군의 섬멸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근대사 또는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 이후의 조선사에서, ‘인민의 반일저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여온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학자적 양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아시아와의 관계를 위하여도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에나가 선생은 소화 55년의 검정합격본에서 청일전쟁에 관한 본문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상 단편적으로 다루어보았다. 나는 한국인으로서 이에나가 교과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것은 올바른 역사관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교과서에서 보다도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실로 경의를 표할 만한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교과서에서도 앞으로 부분적인 수정 또는 보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사교과서로 인한 아시아와 일본의 마찰은 결코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정부가 관료적 검정으로 학자적 양심, 우국적 정신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나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지적해야 하는 것은 이미 검정을 받은 일본교과서와 한국 역사교과서의 내용상 차이의 문제이다. 한국의 고등학교 『국사』에는 동학농민운동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이 간결하고도 또 냉정하게 기술되어 있다.

“조선의 농촌경제는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의해서 괴폐되어 있었다”

“조선농민은 일본정부의 정치적 비호를 받았던 일본의 상인들의 ‘입도선매와 고리대금’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쌀값이 양등했기 때문에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곡령’을 내렸지만 오히려 ‘일본의 항의’로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이같이 자본주의 열강의 침탈과 지배층의 착취에 의해서 농촌경제가 파탄되자 농민층의 불안과 불만이 한층 고조되었다. 한편 대내외적인 정세변화에 따라서 농촌 지식인들과 농민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이 급성장하여 사회변혁의 욕구가 높아졌다.”

이리하여 동학은 종교운동에서 ‘농민운동’, ‘농민전쟁’의 형태로 변화되어 있었다. ‘그것은 탐관오리의 숙청, 일본과 서양세력의 추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를 내걸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 동학농민의 저항이 처음부터 반일적이었던 이유는 조선의 중앙과 일본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고, 또한 조선남단 일대의 일본상인의 거만한 자세와 고리대금 성격의 상술 및 수탈에 의하여 자극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덧붙여야 하겠다.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아시아의 소리와 역사적 사실에 부응하기를 마음으로부터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도 밖으로부터의 침략이 있었던 시기에 그에 저항하는 것은 민족적 자존의 문제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본사회의 경우도 그렇지 않은가.

4. 하나의 바람

E. H. 카는『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명저에서 “어느 사회가 어떤 역사를 쓰는가, 어떤 역사를 쓰지 않는가라는 것은 그 사회의 성격을 의미심장하게 암시하는 것이다”(60쪽)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단적으로 일본의 “사회적 성격을 의미심장하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이후(海部) 총리는 다분히 그러한 역사인식에 입각했기 때문에 지난 5월 3일 싱가포르에서 “장래 일본의 아시아 정책”에 관하여 연설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 전부가 과거의 일본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할 만하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담당할 사람들이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중시하고, 그러한 면에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본국 수상의 확실한 결의가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실천될까.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싶다. 자기의 과거를 반성하고 자기를 초월하려는 것은 성숙한 사람의 훌륭한 덕목인 것이다.

나는 유럽에서 오랜 동안 노력해왔던 것같이, 동아시아에서도 서로 합의하여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했던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부끄러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즐거워하기보다는 그 전쟁시대에 평화를 얻으려고 고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역사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그 전쟁의 사이를 이어서 문화를 전승했던 선인에게 감사하는 역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사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역사관에 입각해서, 예를 들면 서기 7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초경까지 자랑스럽게 꽂피었던 동아시아의 고대문화를 나는 강조해왔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전국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던 동아시아 삼국전란의 시대, 특히 조선반도 내부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패권을 나누었던 전란의 시대를 겪고 나서 출현했던 평화의 시대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동아시아에서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안정을, 국제적으로는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그 위에 아름다운 문화교류를 추

구해서 고대의 동아시아 불교문화를 꽂피웠던 것이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명치 이후 오늘날까지의 근대라고 하는 역사도 동아시아의 전국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껏 그것 또는 그 유산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동아시아의 교과서 논쟁도 있고 이에나가 교과서 재판과 같은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명예를 위하여서도 나는 이에나가 선생의 학자적 양심과 시민적 양심이 존중되기를 바란다.(동경여자대학 교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진보적 학술진영의 목은
과연 무엇인가!!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470쪽, 9,500원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지금 변화하는 한국사회는 혁명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권력의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지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현시기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 중 주로 정책적인 성격을 띤 ▲소득분배 ▲독점 ▲재벌 ▲토지 ▲주택 ▲언론 ▲군축 ▲여성노동 ▲생산 민주주의 ▲교통 ▲사회복지 ▲교육 ▲환경문제 등 12가지 주제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만나 그것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서울 중구 필동 2가 120-1
전화 (02) 279-0157 ~ 0158

역사비평사

잘못 배운 역사, 감추어졌던 역사,
이젠 바로 잡읍시다!!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역사
37장면 1·2

역사문화연구소 편

일제하에서 그리고 극우반공독재정권하에서 왜곡되거나 감추어졌던
우리 역사사실 37편을 뽑아, 시기별로 쟁점별로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한말 · 일제시기 - '애국' 인가 '매국' 인가

'애국계몽운동' 잘못 알고 있다/박찬승
초기 미국 선교사들은 무엇을 전파하였나/ 이해석
교파서의 독립협회 서울은 잘못되었다/ 주진오
3·1운동에서 33인은 '민족대표'인가/ 김성보
'민족대표' 33인은 왜 비폭력을 주장하였나/이지원
브나로드 운동, 누가 왜 하였나/자수경
일제하 조선·동아일보는 민족지였나/김동민

6·25를 다시 생각한다

'6·25설상'의 실제/권영진
유전희답 왜 2년이나 지연되었나/류상암
경남·전라지역 보도연맹원·양평회상의 현장/조성구
전쟁부역자 어떻게 처리되었나/박원준

1960년 대 - 4·19와 한일협정

4·19시기는 혼란기였나/김동춘
한일협정에서의 청구권, '배상' 인가 '구걸' 인가/문해동

한국 문학의 거장 3인을 다시 읽는다
최남선·왜곡된 근대주의·오도된 민족주의/박태순
이광수는 민족주의자인가, 민족번역자인가/김철
김동인 소설의 반역사성/오성호

TV사극에 문제 있다

〈한중록〉-역사적 진실과 통속적 사실의 대립/박광성
(원도) 속의 홍국영과 역사 속의 홍국영/박광용
정화빈을 위한 번역/홍순민

우리의 민족, 북한을 바로 알자

김일성은 '기파'가 아니다/신주백
기독교, 김일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주진오
현준혁은 김일성이 암살하였나/이종석
안공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안성규
북한의 국화는 전달례가 아니라/역문연
북한은 백두산을 중국에 팔아넘겼나/김교만

/각권 5,000원

서울 중구 필동 2가 120-1
전화 279-0157, 0976

민주적인 법제도의 정착과 자유로운 인권 보장을 위한 '역비 법과 사회 11'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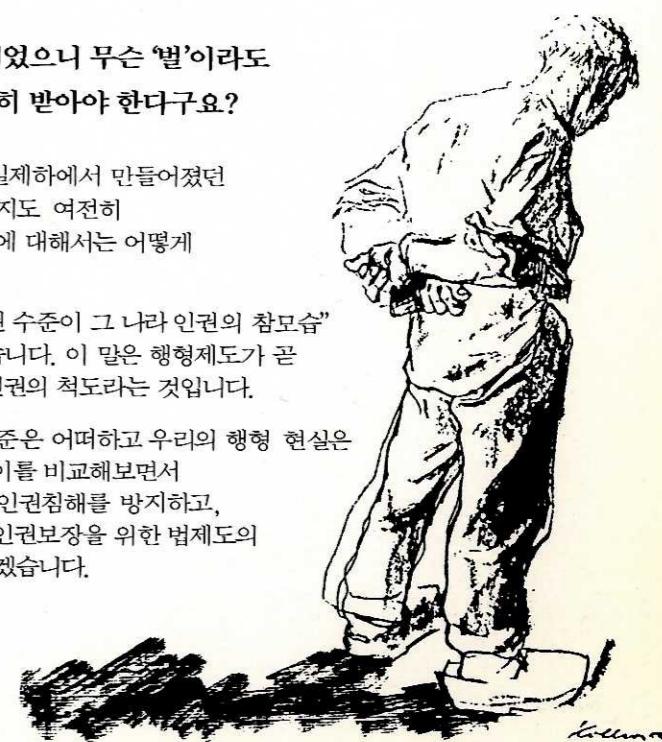
서울지방변호사회

'죄'를 지었으니 무슨 '별'이라도
톡톡히 받아야 한다구요?

그러나 70년 전 일제하에서 만들어졌던
감옥법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옥에서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 인권의 참모습"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행형제도가 곧
현대 문명국가 인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국제인권법의 수준은 어떠하고 우리의 행형 현실은
어떠한지, 그 차이를 비교해보면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행형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겠습니다.



/값 7,500원

